■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63-411.
http://doi.org/10.17948/kcs.2019..84.363

丁若鏞 鄕遂論의 추이와 그 함의

윤석호(尹錫皓)*

목 차

1. 서론
2. 유교 경전에서의 鄕遂制와 그 해석적 전통
3. 『尙書知遠錄』에서의 鄕遂論
4. 『尙書古訓』까지의 鄕遂論 변화 추이
5. 鄕遂論의 변화와 『經世遺表』 저술의 과정
6.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교 경전에서 전하는 鄕遂制의 원형과 이에 대한 先儒의 일반적 독법, 그리고 이를 비판하며 제기된 丁若鏞의 鄕遂論과 그 만년에까지의 변화과정을 계기적으로 논증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 특징은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周禮』는 향수제의 실상을 가장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鄕과 遂의 성격과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둘째, 鄭玄은 향을 농업지대로, 그 위치를 왕성으로부터의 100里로 간주했다. 그리고 6향의 가호로부터 6軍이 징발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讀法은 기내를 천자의 관료에 의한 통치지역과 봉건으로 양분했던 견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셋째, 정약용은 『尙書知遠錄』에서 향수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 그는 향을 비농업지대로서 도성 내부로 위치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후에도 변치 않았던 핵심 논지였다.

* 경남과학기술대 교양학부 강사.

넷째, 『經世遺表』에서부터 만년의 『尙書古訓』에 이르기까지 정약용의 향수론은 변화했다. 그 주요한 추이는 3가지로, 親兵 징발지역의 확대, 기내봉건의 부정에 기초한 官守 방식의 일원화, 모든 도읍에서 '營國'의 원리와 '6鄕·6遂'의 보편화이다.

다섯째, 『經世遺表』에는 『尙書知遠錄』 단계의 향수론에서부터 『尙書古訓』 단계의 향수론에 이르기까지의 다층적인 변화상이 확인된다. 한편 신작과의 서신에서 표명된 향수론은 다산 최종의 향수론으로 이행하기 직전의 견해로 보인다. 이로써 볼 때, 『經世遺表』는 『尙書知遠錄』 시기의 古法 이해 하에서 착수되어, 신작과의 서신 이후에까지 수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다산은 초기의 향수론에 근거하여 〈典堵司〉의 도성개혁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향수론의 변화에 따라 수정된 도성개혁안을 〈匠人營國圖〉에서 개진했다. 그리고 〈장인영국도〉에서의 가호편제방식은 〈敎民之法〉과 〈科擧之規〉 등에서 제기된 교선개혁안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여섯째, 『經世遺表』에 피력된 다층의 향수론은 『經世遺表』가 다산의 견해변화에 따라 수정[혹은 가필]되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내용적 증거이다. 그리고 『經世遺表』의 집필과정에 대한 이같은 추정은 향후 『經世遺表』(김영호 소장본)의 서지적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히 논증될 수 있다.

주제어: 丁若鏞, 鄕遂制, 古法, 畿內, 『尙書知遠錄』, 『經世遺表』, 『尙書古訓』, 鄭玄, 『周禮』, 封建, 官守, 관료제.

1.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故鄕'이란 단어는 전원의 풍경이 펼쳐진 고즈넉한 시골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이미 200여 년 전의 정약용은 '鄕'에 고착된 이 같은 함의가 '鄕遂制'의 經義를 오독한 한나라 儒者의 해석에 연원함을 지적한 바 있다. 鄕은 정치와 교육·교화의 주체이자 대상이었던 士의 거주 공간으로서, 도성 내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당대에도 파격적이었던 다산의 주장은 그의 고법 이해와 경세학에 있어 골격을 이루는 것이었다.[1] 이에 선행의 연구에서는 다산 향수론의 다양한 함의가 심도 있게 해명된 바 있다. 먼저 해배 후 申綽과의 '6鄕

1)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사상과 경세론」, 『한국학보』 제78호, 일지사, 1995a; 「정약용의 경학사상과 경세론 (하)」, 『한국학보』 제79호, 일지사, 1995b.

制' 논쟁에 주목하여, 양자의 학문적 지평을 고려한 바탕 하에서 '6鄕制' 독법의 차이와 의미를 정밀히 논증했다.[2] 또한 다산의 경세 방안이 『周禮』의 전장을 모범으로 했으며, 그의 향수론 또한 기내를 '國[都城]'과 '野'로 이원화했던 『周禮』의 지리적 관념 위에 鄕과 遂를 각각 배치한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鄕을 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知人'의 공간으로, 수를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安民'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공간에서 다산이 기획했던 개혁안의 차별적 의도를 해명했다.[3]

한편 『經世遺表』 국가개혁안의 핵심적 원리를 '體國經野'로 보고, '體國'에 있어 6鄕制가 지니는 의미를 밝힌 바 있다.[4] 또한 다산의 古法 이해와 경세안에 있어 '士'와 '鄕'이 지니는 제도적·철학적·의례적 함의가 논증되기도 했다.[5] 이상은 다산 경세학이 고법[경학]을 모델로 하여 구축되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동시에 '6鄕制'가 다산 경세학의 체제적 기초가 됨을 해명한 선구적 연구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있었다. 첫째로, 유교 경전에서의 향수제는 가호의 편제, 농지의 분급, 親軍의 징발 범위 등의 다대한 제도적 양상들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연구의 초점이 '鄕'에 두어졌으며, 이로 인해 다산이 '향수제' 전체의 규모에서 궁구했던 제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둘째로, 다산의 향수론은 『尙書知遠錄』에서 처음 그 체계를 갖춘 이래로 만년의 『尙書古訓』에 이르기까지 누층적인 지속과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즉 '鄕'에 부여되었던 도성 내 공간으로서의 차별적 성격은 지속·강화되었지만, 향수론과 연관된 제도적 논점과 이에 대한 이해는 꾸준히 변화되고 있었다. 특히 기내에서의 통치방식은 향수제와 관련해 다산이 만년에까지 궁구했던 논점으로,[6] 이에 대한 변화되는

2) 金文植, 「丁若鏞과 申綽의 六鄕制 이해」, 『한국학보』 제61호, 일지사, 1990.
3) 김문식, 앞의 글, 1995a; 앞의 글, 1995b.
4) 안병직, 「다산과 체국경야」, 『다산학』 제4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3.
5) 백민정, 「정약용 經世書의 鄕禮 규정과 공동체 운영의 특징」, 『동양철학』 제41호, 한국동양철학회, 2014; 「『周禮』 '6鄕制' 해석을 통해 본 다산의 경세 구상—'향삼물'과 '향팔형' 논의를 중심으로」, 『다산학』 제29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김문식, 「茶山 丁若鏞의 鄕禮 이해」, 『한국실학연구』 제31호, 한국실학학회, 2016.

독법은 20년 남짓의 향수론 추이에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자양으로 삼되, 국가 통치체제의 범주에서 다산 '향수론'의 논의구조를 해명하는데 목표를 둔다. 특히 『尙書知遠錄』에서 『尙書古訓』에 이르기까지의 확장되는 논점과 변화되는 견해를 고증하고, 이로써 확인되는 추세의 함의를 기내 통치방식의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같은 향수론 변화과정이 『經世遺表』의 저술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시론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2. 유교 경전에서의 鄕遂制와 그 해석적 전통

1) 鄕遂制의 경전적 원형과 논점들

(1) 鄕·遂의 위치와 성격

『周禮』에는 기내의 공간을 구조화한 다층의 개념이 나타난다. 그중 '國'과 '野'는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6官[7]의 經文은 모두 '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國'을 都城으로, 그 외의 전역을 '野'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周禮』는 농지의 유무를 기준으로 國[都城]과 野를 분별하고 있다. 먼저 〈載師〉는 기내를 중심에서부터 國中-園地-近郊-遠郊-邦甸-家稍-邦縣-邦都로 구분한 뒤 해당 공간에서의 地目을 설명했다. 그런데 國中[都城]에서는 시전과 취락에 해당하는 廛里를 언급한 반면,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를 배치시키고 있다.[8] 이는 〈匠人〉에서도 확인되는데, 사방 9里의 도성 내부에 宮城·宗

6) 삼대의 기내 통치방식에 대한 다산의 견해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다만 『周禮』의 영향하에서 『經世遺表』가 군현제적 지향을 고수했으며, 이것이 『經世遺表』가 지닌 내적 한계이자 '미졸업'의 이유라고 평가한 연구가 있다. 안병직, 앞의 글. 한편 여전제가 만년에까지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다산이 지방 자치, 즉 민의 입장에서의 봉건을 지향했다는 견해도 제출된 바가 있다. 趙誠乙, 「丁若鏞의 地方制度 改革論」, 『東方學志』 제77·78권,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 이상의 논의에 대한 비평은 별도의 세밀한 논증을 요한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산 경세학에서 이른바 봉건-군현의 지향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산이 생각한 삼대적 봉건의 개념과 그 시행의 지역적 범위, 그리고 기내에서의 통치방식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본고가 논증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7) 6官은 天官冢宰, 地官司徒, 春官宗伯, 夏官司馬, 秋官司寇, 冬官司空이다. 그중 冬官은 일찍이 사라져서, 漢儒들이 이를 「考工記」로 저술했다고 전한다.

廟・社稷・朝廷・市廛 등이 들어선다고 밝혔을 뿐 농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본다면 『周禮』는 國을 都城이자 비농업지대로, 野를 도성을 제외한 전역의 농업지대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인은 기내의 전역에 거주했겠지만, 공간별 취락의 성격은 이처럼 기내를 國과 野로 양분한 토대적 구조하에서 규정되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가호의 편제로서 『周禮』가 제시했던 鄉과 遂이다. 鄉은 〈大司徒〉에 나타나는데, 가호를 家-比[5家]-閭[5比]-族[4閭]-黨[5族]-州[5黨]-鄉[5州]의 비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묶는 방식이다.[9] 한편 遂는 〈遂人〉에 나타나는데, 家-鄰[5家]-里[5鄰]-酇[4里]-鄙[5酇]-縣[5鄙]-遂[5縣]의 순서로 가호를 묶는다.[10]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鄉과 遂에서는 각급의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비법으로 가호를 편제하고 있다. 이는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가호를 구성하는 민인의 신분적・직역적 특징과 이로써 규정되는 공간의 기능적 성격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周禮』는 鄉과 遂의 위치와 성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는 鄉・遂와 관련된 관직의 임무를 통해 추론될 수밖에 없다.

먼저 鄉과 관련된 직사로는, 6鄉을 총괄하는 大司徒 1인, 각 鄉을 총괄하는 鄉大夫 6인, 교육과 천거를 관할하는 鄉師 4인, 옥송을 관할하는 鄉士 8인 등이 있다.[11] 또한 鄉 예하의 각급 편제마다 比長-閭胥-族師-黨正-州長 등이 배치되어 해당 가호를 관장한다.[12] 그런데 이들에 대한 『周禮』의 규정에는 遂와 대비되는 3가지의 특징이 확인된다.[13] 첫째로 이들은 卿[大司徒와 鄉大夫]

8) 「載師」, 『周禮』 地官司徒. “以廛里任國中之地, 以場圃任園地, 以宅田士田賈田任近郊之地, 以官田牛田賞田牧田任遠郊之地, 以公邑之田任甸地, 以家邑之田任稍地, 以小都之田任縣地, 以大都之田任畺地.”

9) 「載師」, 『周禮』 地官司徒. “令五家爲比使之相保. 五比爲閭使之相受, 四閭爲族使之相葬, 五族爲黨使之相救, 五黨爲州使之相賙, 五州爲鄉使之相賓.”

10) 「遂人」, 『周禮』 地官司徒. “掌邦之野. 以土地之圖, 經田野, 造縣鄙形體之法, 五家爲鄰, 五鄰爲里, 四里爲酇, 五酇爲鄙, 五鄙爲縣, 五縣爲遂, 皆有地域溝樹之, 使各掌其政令刑禁, 以歲時稽其人民, 而授之田野, 簡其兵器. 教之稼穡.” 또한 각급마다는 鄰長-里宰-酇長-鄙師-縣正-遂大夫 등의 官守가 地官 관련 행정과 통치를 담당했다.

11) 이들 중 鄉士는 秋官 소속이며, 나머지는 地官 소속이다.

12) 이들은 모두 지관 소속의 관원이다.

13) 遂는 都鄙 등과 함께 농업지대인 ‘野’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하에 서술된 ‘鄉’의 특징들은 ‘遂’뿐만 아니라 ‘野’ 전체와 대비되는 성격이기도 하다.

에서부터 下士[比長]에 이르는 관품이 부여된 관료제 내의 정식 관원이다. 둘째로 鄕 내의 거주자를 '民'으로 명명하고 있다. 셋째로 교화와 교육, 천거 등의 임무는 향 관련 관료에게만 부여되며,[14] 반면 향에서의 농지의 구획·분급이나 군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遂에서도 편제의 위계에 따라 각각 관원이 배치되었다. 먼저 6遂 전체는 2인의 遂人과 4인의 遂師가 통할했다. 그리고 각 遂는 遂大夫가, 예하의 각급은 鄰長-里宰-酇長-鄙師-縣正 등이 관할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周禮』의 규정에서도 鄕과 대비되는 3가지의 특징이 확인된다.[15] 첫째로 편제 등급별 관원의 품계가 鄕에 비해 한 단계씩이 낮다. 즉 鄕大夫의 관품이 卿[=上大夫]인 것과 달리, 동급의 편제를 관할하는 遂大夫의 관품은 中大夫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말단 편제의 담당자의 경우, 鄕의 比長이 下士인 것과 달리 遂의 鄰長은 品官이 아니다. 둘째로 遂 내의 거주자를 '甿'으로 명명하고 있다.[16] 셋째로 교화와 교육, 천거 등의 임무는 보이지 않으며, 대신 농지의 구획·분급, 9職의 장려, 군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상으로 보자면 鄕과 遂는 동일한 비법과 체계하에서 가호를 편제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교화[교육]과 농업이라는 분별된 특징을 띠고 있다. 이는 민인의 신분·직역 구성에 있어 양자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鄕의 거주자인 民은 교화와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治者이고, 遂의 거주자인 甿은 農者를 비롯한 직접생산자로서의 被治者인 것이다.

하지만 이상을 근거로 하여 鄕을 비농업지대로, 遂를 농업지대로 단정하기란 간단치 않다. 『周禮』 내에는 이에 배치되거나 혹은 불명확한 經義도 존재

14) 〈大司徒〉, 〈鄕師〉 등

15) 이하는 농업지대로서의 '遂'가 '鄕'에 대비해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한편 '遂'는 마찬가지로 농업지대의 성격을 띠는 '도비'와도 차이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농지의 분배방식인데, '遂'에서는 농지를 10구법을 쓰지만 도비에서는 정목법을 쓴다. 논자에 따라서는 10구법과 정목법이 농지의 분급방식뿐만 아니라 구획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삼대 토지제도의 경전적 원형과 논점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윤석호, 「三代 畿內의 토지제도에 대한 『周禮注疏』의 해석」, 『大同文化硏究』 제106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a.

16) 「遂人」, 『周禮』 地官司徒. "凡治野, 以下劑致甿, 以田里安甿, 以樂昏扶甿, 以土宜教甿."; 「遂大夫」, 『周禮』 地官司徒. "三歲大比, 則帥其吏而興甿, 明其有功者, 屬其地治者. 凡爲邑者, 以四達戒其功事, 而誅賞廢興之."

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6鄕의 위치이다. 都城 밖은 농업지대[野]이므로, 6鄕을 비농업지대로 간주한다면 그 위치는 都城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匠人〉에서 규정한 사방 9里의[17] 면적 내에 6鄕의 75,000家가 자리하기란 산술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도성에는 王宮과 官署, 市廛, 宗廟, 社稷도 들어서야 한다. 둘째는 6鄕이 도성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내의 구조이다. 6鄕의 위치가 도성에 비정되면, 6鄕과 연접한 6遂의 위치는 園地에서 4郊까지, 넓게는 甸地에 이르게 된다. 이는 비록 농지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6遂의 75,000家가 자리하기에 대단히 넓은 공간이다. 이에 만약 6遂의 범위를 園地에서 甸地 내부의 일정 공간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6遂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의 가호 및 농지 편제방식이 해명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반면 6鄕과 6遂를 모두 농업지대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난점은 있다. 첫째는 6鄕을 농업지대로 규정할 경전적 근거이다. 『周禮』에는 6鄕에서의 농업 관련 전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6鄕을 농업지대로 비정하기 위해서는 6遂 혹은 都鄙에서 규정된 농업관련 전장을 임의로 6鄕에까지 적용해야 한다. 둘째는 6鄕과 6遂의 분별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周禮』는 비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鄕'과 '遂'라는 상이한 명칭을 통해 양 공간의 가호를 구분했다. 더구나 그 차이가 민인의 신분 및 직역구성에 기인함을 추측케 하는 다수의 경문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6鄕을 농업지대로 간주하게 되면, 이처럼 鄕과 遂를 분별했던 『周禮』의 경의를 간과할 수밖에 없다.

(2) 鄕·遂의 개수와 '國'의 위계

『周禮』는 鄕과 遂의 개수를 각각 6개로 규정하고 있다.[18] 이른바 '6鄕·6遂'로서의 鄕遂制이다. 하지만 '6鄕·6遂'가 시행된 국가[國]의 범위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먼저는 '6鄕·6遂'를 모든 층위의 國에서 시행된

17) 「匠人」, 『周禮』 冬官考工記. "匠人營國, 方九裏, 旁三門. 國中九經九緯, 經塗九軌. 左祖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

18) 鄕의 개수가 6개라는 것은 〈大司徒〉, 〈小司徒〉, 〈鄕師〉, 〈鄕大夫〉, 〈司勳〉 등에서, 遂의 개수가 6개라는 것은 〈遂人〉에서 전한다.

보편적 제도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달리 『周禮』가 천자국에서 시행된 전장을 담고 있으므로, '6'이라는 개수 역시 천자국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國'의 위계에 따라 鄕·遂의 개수가 변화한다고 보는 것이다.

군제에 대한 『周禮』의 규정은 후자의 독법과 관련지어 설명될 여지가 있다. 하나는 〈小司徒〉의 군사 편제방식이다. 군사를 人-伍[5人]-兩[5伍]-卒[4兩]-旅[5卒]-師[5旅]-軍[5師]의 순서로 편성했는데,[19] 이는 鄕·遂에서의 가호 편제방식과 같다. 그리고 이 같은 비법상의 동질성은 군사의 징발과 편제가 鄕·遂의 가호 편제에 기초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있다. 가호마다 1인씩 군사로 징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周禮』 「夏官司馬」의 서문으로, 친병의 규모를 '國'의 위계에 따라 6軍[天子國]-3軍[大國]-2軍[次國]-1軍[小國]으로 구분했다.[20] 그런데 앞서와 같이 비법의 동질성에 근거해 鄕·遂의 가호마다 1인의 군사가 징발된다고 간주한다면, 가호의 수와 친병의 수는 같게 된다. 이는 결국 서문에서 말한 친병의 규모 변화가 鄕[혹은 遂]의 개수 변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國'의 위계에 따라 鄕·遂·親兵의 개수가 모두 6개[천자국]-3개[대국]-2개[차국]-1개[소국]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독법은 비법의 산술적 동일성에 근거했을 뿐, 철저한 경전적 해명 하에서 도출된 것은 아니다. 친병의 수가 鄕[혹은 遂]에서의 가호 수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혹은 수]의 모든 가호가 兵農一致의 의무를 지는 농민이라는 것, 아울러 이들에게 예외 없이 농지가 분배되었다는 것이 해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周禮』는 鄕에서의 농업 관련 전장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夏官司馬」의 서문은 국의 위계에 따른 친병 규모의 차등만

19) 「小司徒」, 『周禮』 地官司徒. "乃會萬民之卒伍, 而用之, 五人爲伍, 五伍爲兩四兩爲卒五卒爲旅五旅爲師五師爲軍以起軍旅以作田役以比追胥以令貢賦."

20) 「序」, 『周禮』 夏官司馬. "凡制軍, 萬有二千五百人爲軍, 王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이때의 軍은 기내 전체의 農兵 중에서 軍旅에 징발되는 군사를 의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곧 살펴보겠지만, 정현은 이를 '6鄕의 군대'로, 공영달은 '正軍'으로, 다산은 '親兵'으로 명명했다. 본 논고는 다산의 향수론을 논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의 표현에 따라 「夏官司馬」 〈序〉에서의 '軍'을 '親兵'으로 명명한다.

을 규정했을 뿐이었으므로, 친병 징발의 방식과 범위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기내 각지의 병농 중 일부가 친병으로 차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친병의 징발 범위는 최대 기내 전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징발방식하에서는 친병의 규모와 鄕·遂의 개수가 무관해지며, 따라서 '6鄕·6遂'는 모든 등급의 國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된 전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수의 개수에 대한 이 같은 상이한 독법은 다른 경전을 독해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尙書』의 「費誓」가 대표적이다. 伯禽은 주공의 맏아들이자 노나라의 國君으로 책봉된 인물인데, 「費誓」는 백금이 淮夷와 西戎의 반란을 토벌하면서 費에서 했던 맹세이다. 그리고 「費誓」 중에는 백금이 전쟁에 동원한 노나라 백성에 대해 '魯人, 三郊三遂'라고 칭하는 구절이 있다.

이때의 '3遂'는 이상에서 제기한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노나라는 大國이었으므로, '3郊·3遂'는 이 같은 노나라의 지위에 상응하는 鄕·遂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6鄕·6遂'가 보편적인 전장이었으며, 대국인 노나라에서도 '6鄕·6遂'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문에서의 '3郊·3遂'는 '6鄕·6遂' 중에서 당시 전쟁에 동원된 일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鄕·遂의 범위와 기내에서의 통치방식

封建[21]은 토지를 하사하고 나라[國]를 세워주는 정치적 행위이다. 유교 경전에서는 천하를 5服[혹은 9服]과 9州의 중층적 구조로 분할했고,[22] 이를 다시 천자국인 王畿[畿內]와 그 외의 지역인 畿外로 나누었다. 그리고 畿外에서는 封建을 시행하여 제후의 배타적인 통치권을 용인했다. 이는 천자와 제후의 친족적 결합을 보여주는 경문들과 함께 '分權性'이라는 封建의 기본 개념을 이룬다.[23]

---

21) '封建'에 대한 가장 이른 용례는 「殷武」, 『詩經』 商頌의 "命于下國, 封建厥福."이다.

22) 유교 경전에서 전하는 천하에 대한 지리적 분할과 그 관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김영진, 「고대 중국의 지리적 크기와 관념에 대한 고찰」, 『國際政治論叢』 제51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23) 『周易』 「比卦」의 〈象傳〉에는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比이니, 선왕이 이 이치를 본받아서 만국을

畿外가 封建의 공간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과 달리, 畿內 采邑의 통치방식에 대한 설명은 모호하거나 경전마다 차이가 있다. 먼저 대체로 경전은 采邑의 명분이 천자 예하의 官僚에게 지급된 '祿'이며, 채읍주에게는 수조권 즉 해당 지역의 민인이 국가에 납부할 전조를 대신 수취하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采邑을 采邑主의 순전한 수조지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采邑이 采邑主의 통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관료체제 하에서 통치되었음을 입증할 경전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문에 따라서는 采邑主의 통치권을 용인하는 것으로 독해될 여지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禮記』 〈王制〉를 보자.[24] 〈왕제〉는 천하를 9개의 州[사방 1000리]로 분할하고, 가운데의 州를 천자국으로 비정하여 이를 '縣內'라 명명했다. 그리고 기외인 8州에서의 封建을 설명했는데, 州마다 100里의 國이 30개, 70里의 國이 60개, 50里의 國이 120개의, 총 210개 國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제〉는 천자국인 縣內에도 國이 세워졌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3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기내의 국은 제후가 아닌 천자의 관료에게 분급되었다. 둘째는 그 개수가 9개[100리의 국], 21개[70리의 국], 63개[50리의 국]의 총 93개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셋째는 '封'의 대상인 기외의 國과 달리 현내의 國을 '胙'의 대상으로 설명했다. 이로써 본다면 〈왕제〉에서의 '國'은 제후나 왕신에게 공히 수여된 것으로, 이들의 통치권이 보장된 분치의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구나 기내에서도 국이 설치되었다고 봄으로써, 분치의

세우고 제후들과 화친한다.[象曰, 地上有水比, 先王, 以建萬國, 親諸侯.]"라고 했다. 『尙書』에서는 삼대 封建의 정황이 더 드러나는데, 〈堯典〉에는 문명을 개창한 요가 아홉 부족을 결속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 후 만방을 화합시켰다는 구절이 있으며, 〈舜典〉에는 요에게서 권력을 선양받은 순임금이 사방을 巡狩하며 제후들을 시찰하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禹貢〉에는 천하를 5복을 구획한 뒤 제후의 봉토를 마련했음을 전하고 있다. 『周禮』 〈大司徒〉에서도 公·侯·伯·子·男의 방국을 각각 500里·400里·300里·200里·100里로 규정하고, 천자가 이들 邦國에서 수조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凡建邦國以土圭土其地而制其域. 諸公之地封疆方五百里其食者半, 諸侯之地封疆方四百里其食者參之一, 諸伯之地封疆方三百里其食者參之一, 諸子之地封疆方二百里其食者四之一, 諸男之地封疆方百里其食者四之一.]

24) 이하는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했다. 「王制」, 『禮記』. "凡四海之內九州, 州方千里. 州建百里之國三十, 七十里之國六十, 五十里之國百有二十, 凡二百一十國. 名山大澤不以封. 其餘以爲附庸間田. 八州, 州二百一十國. 天子之縣內, 方百里之國九, 七十里之國二十有一, 五十里之國六十有三, 凡九十三國. 名山大澤不以胙, 其餘以祿士, 以爲間田."

공간적 범위를 천자국으로까지 확대했다. 다만 기외와 기내의 '國'을 각각 '封'과 '畀'의 대상으로 분별한 함의가 양자의 분치 방식상의 차이를 내포하는 것인지는 해석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다.

한편 『周禮』는 기내에서의 관료제적 통치방식을 가장 강하게 표명한 경전이다. 특히 鄕遂制는 각급의 편제마다 관할 관료가 배치된 계서적이고 균질적인 형태의 관료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기내에서 관료제적 통치방식 즉 官守가 시행된 지리적 범위이다. 향수제는 가호의 편제를 토대로 운영되므로, 그 시행범위는 향수의 가호편제가 시행된 범위와 같다.

그런데 『周禮』에서는 鄕·遂의 지리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도비와 같이 鄕·遂가 아닌 지역의 경우, 鄕·遂에서와 동일한 가호편제와 관수가 시행되었는지, 아니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민인을 편제 및 통치했는지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25]

이를 경문을 통해 살펴보면, 〈太宰〉에서는 都鄙에서 시행하는 8則을 정하고,[26] 8칙이 都鄙에 전달·시행되는 계통을 순차적으로 나열했다.[27] 아울러 춘관·하관·추관 등에서는 都鄙와 관련한 직장이 보이는데, 바로 都宗人·家宗人[「春官宗伯」 소속], 都司馬·家司馬[「夏官司馬」 소속], 都士·家士[「秋官司寇」 소속] 등과 같이 '都'와 '家'가 붙은 관직들이다. 또한 〈朝大夫〉에서는 조대부의 업무를 "都家에서의 國治를 관장하는데, 매일 조정에서 事故를 듣고, 이를 군장에게 알린다. 왕국에서 정령이 있을 경우, 朝大夫에게 명한다."라고[28] 하여, 중앙에 상주하면서 중앙에서의 정령을 都鄙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6관의 관료제적 통치방식이 都鄙에도 균질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朝大夫, 都宗人·家宗人, 都司

25) 〈小司徒〉는 도비에서 '九比之法'이 시행되었다고 했으나, 그 대상이 토지에 한정되는지 혹은 가호를 포괄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26) 「太宰」, 『周禮』 天官冢宰. "以八則治都鄙, 一曰祭祀, 以馭其神, 二曰法則, 以馭其官, 三曰廢置, 以馭其吏, 四曰祿位, 以馭其士, 五曰賦貢, 以馭其用, 六曰禮俗, 以馭其民, 七曰刑賞, 以馭其威, 八曰田役, 以馭其衆."

27) 「太宰」, 『周禮』 天官冢宰. "乃施則於都鄙, 而建其長, 立其兩, 設其伍, 陳其殷, 置其輔."

28), 「朝大夫」, 『周禮』 秋官司寇. "掌都家之國治. 日朝以聽國事故, 以告其君長. 國有政令, 則令其朝大夫."

馬・家司馬, 都士・家士 등의 관직이 都鄙에 파견된 지방관인지, 아니면 都鄙에서 采邑主의 자치를 용인한 하에서 이를 보조했던 중앙의 관리인지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문에서 '君長'으로 명명한 존재가 수조자로서의 采邑主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이와 함께 통치권이 부여받은 采邑의 수장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경문 내적 정황을 고려한다면, 官守의 범위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먼저 관수를 鄕・遂에서의 편제와 결합된 고유한 통치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鄕・遂의 가호편제방식과 관수가 오로지 향수에서만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도비에서의 비법인 '九比之法'은 농지뿐만 아니라 가호도 함께 편제하는 것으로, 통치방식 역시 향수에서의 官守와는 달리 采邑主의 분치로 상정할 수 있다.

반면 관수를 비단 향수에서뿐만 아니라 기내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된 통치방식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2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鄕・遂가 아닌 지역에서도 鄕・遂에서와 동일한 비법과 관수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鄕・遂가 아닌 지역에서는 鄕・遂와는 다른 방식의 가호 편제와 관수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2) 先儒의 鄕遂論: 鄭玄과 孔穎達

(1) '野'로서의 鄕・遂와 기내봉건의 인정

鄭玄은 後漢의 학자로, 三禮[儀禮, 禮記, 周禮]를 비롯한 다수의 경전에 주해를 남긴 인물이다. 특히 『周禮注』는 賈公彦의 疎를 거친 뒤[29] 송대에 이르러 13경 주소의 지위를 얻었고, 이로써 그 견해는 후대의 유자들이 三代의 古法을 해석함에 있어 지침이 되었다.

정현의 鄕遂論은 『周禮注』에 피력되어 있는데, 핵심은 鄕을 농업지대, 즉 '野'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周禮』 독법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29) 三代의 토지제도에 대한 정현과 가공언의 독법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윤석호, 앞의 글, 2019a.

다. 첫째로 鄕과 遂의 동질성이 강조되었다. 정현은 『周禮』가 농업지대로서의 鄕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遂의 토지제도인 10구법이 鄕에서도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30] 또한 〈遂大夫〉의 '3년마다 大比하는데, 관리를 거느려 甿을 興하고[三歲大比, 則帥其吏而興甿]'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甿을 興한다는 것은 民 중에서 어진 자[賢者]와 능력 있는 자[能者]를 천거하는 것으로, 6鄕에서 하는 것과 같다."라고[31] 주해하여, 鄕의 천거제가 遂에서도 시행되었다고 간주했다. 이처럼 정현은 『周禮』가 鄕과 遂 각각에서만 규정해 놓은 제도들에 대해 그 시행범위를 상호 확장했고, 이로써 鄕과 遂를 농업지대이자 동질의 제도가 시행된 공간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독법 하에서는 『周禮』가 '民'과 '甿'의 분별을 통해 표명했던 양자의 차이는 간과되고 있다.

둘째로 토지제도를 기준으로 '野'를 횡적으로 분할했다. 〈載師〉는 기내를 '國中-園地-近郊-遠郊-甸地-稍地-縣地-畺地'로 구분했다. 이에 대해 정현은 각 지역의 범위를 100리[4郊]-200리[전지]-300리[초지]-400리[현지]-500리[강지]로 나눈 다음, 6鄕과 6遂의 위치를 각각 100리까지[4교]와 200리까지[전지]로, 도비를 초지-현지-강지로 비정했다.[32] 또한 6遂와 도비 이외의 공간에 公邑이 들어섰다고 봄으로써, 전지에서 강지에 이르는 공간을 횡적으로 분할했다. 나아가 정현은 10溝法과 井牧法을 상이한 토지제도로 간주하고, 이상과 같은 野의 구조 하에서 토지제도의 시행권역을 구분했다. 즉 鄕과 公邑에서는 遂의 10溝法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론했고,[33] 도비에서는 〈小司徒〉에서 규정된 바의 井牧法이 시행된다고 본 것이다.[34]

---

30) 「小司徒」, 『周禮注疏』 地官司徒. "[經文] 乃會萬民之卒伍而用之. 五人爲伍, 五伍爲兩, 四兩爲卒, 五卒爲旅, 五旅爲師, 五師爲軍. 以起軍旅, 以作田役, 以比追胥, 以令貢賦. [鄭玄注] (…) 鄕之田製, 與遂同."

31) 「遂大夫」, 『周禮注疏』 地官司徒. "[經文] 三歲大比, 則帥其吏而興, 明其有功者, 屬其地治者. [鄭玄注] 興甿, 舉民賢者能者, 如六鄕之爲也. 興猶舉也, 屬猶聚也. 又因舉吏治有功者, 而聚敕其餘以職事."

32) 「載師」, 『周禮注疏』 地官司徒.

33) 정현은 100里에서 200里까지의 공간 내에 6遂가 설치되는데, 이를 제외한 농지에는 공읍이 설치되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300리에서 500리까지의 공간에서도 일부는 도비가 만들어진 한편으로, 남는 농지는 공읍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遂人」, 『周禮注疏』 地官司徒.

34) 정현은 향수에서의 10구법과 달리 도비에서 정목법을 규정한 것에 대해, 채지[도비]에 정전을 만드는 것은 향수에서 도성을 세우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小司徒」, 『周禮』 地官. "此謂造都鄙也. 采地製井田, 異於鄕遂, 重立國."

셋째로 토지제도를 기준으로 구분된 野의 두 권역에서 각각 상이한 통치방식이 시행된다고 보았다. 정현은 6遂와 도비를 제외하고 남는 땅이 공읍이 되며, 천자가 대부로 하여금 이곳을 다스리게 했다고 해석했다.[35] 6鄕-6遂-公邑이 모두 官守 하에서 통치되었다고 간주한 것이다.

반면 정현은 도비에서의 통치가 采邑主 혹은 그가 임명한 家臣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약간의 부연이 필요하다. 『周禮』의 朝大夫는 중앙의 정령을 都家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만약 전달하지 못하면 주살되었다.[36] 다만 군려의 일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有司를 주살토록 했는데,[37] 이는 군려가 朝大夫와는 다른 계통으로 전달·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有司가 중앙에서 都家로 정령을 전달하는 관직인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전달된 정령을 都家에서 수행하는 관직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鄭玄은 都家를 公·卿·大夫의 采地인 都鄙로, 公·卿·大夫를 都家의 君長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采邑에 采邑主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조정에서 반포된 정령을 朝大夫가 君長과 都鄙에 각각 전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有司 역시 조대부와 마찬가지로 정령을 都鄙에 전달하는 중앙의 관직이라고 했다. 아울러 『周禮』의 都司馬와 家司馬를 有司에 비정했는데,[38] 都와 家가 붙은 관직을 都鄙에 거주하는 지방관이 아닌 중앙에서 지방의 실무를 통제·관할하는 관직으로 간주한 것이다. 요컨대 정현은 朝大夫나 都司馬·家司馬 등이 전한 중앙의 정령을 전달받아서 도비를 직접 다스리는 존재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周禮』의 9命에 대한 주해에서 정현이 도비에서의 관료를 설명

35) 「載師」, 『周禮注疏』 地官司徒. "[經文] 以廛裏任國中之地 (…) 以大都之田任畺地. [鄭玄注] 公邑, 謂六遂餘地, 天子使大夫治之, 自此以外皆然. 二百裏·三百裏, 其上大夫如州長, 四百裏·五百裏, 其下大夫如縣正. 是以或謂二百裏爲州, 四百裏爲縣雲. 遂人亦監焉."

36) 「朝大夫」, 『周禮』 秋官司寇. "凡都家之治有不及者, 則誅其朝大夫."

37) 「朝大夫」, 『周禮』 秋官司寇. "在軍旅, 則誅其有司."

38) 鄭玄은 都司馬와 家司馬가 모두 중앙에서의 관직이라고 했다. 그런데 都司馬의 경우 천자가 임명한 왕신인 반면, 家司馬의 경우 采邑主의 가신 중에서 임명하여 중앙에 파견한 것으로 이해했다. 「家司馬」, 『周禮』 夏官司馬. "[經文] 家司馬, 各使其臣, 以正於公司馬. [鄭玄注] 家, 卿大夫采地. 正猶聽也. 公司馬, 國司馬也. 卿大夫之采地, 王不特置司馬, 各自使其家臣爲司馬, 主其地之軍賦, 往聽政於王之司馬. 王之司馬其以王命來有事, 則曰國司馬."

한 부분이다. 9命은 천자가 제후와 신료에게 내리는 관작의 급수를 말한다. 이에 대해 〈典命〉은 기외 제후와 기내 관료의 命數를 각각 구분하여, 제후는 9命[上公]·7命[侯伯]·5命[子男]이고, 관료는 3公[8命]·卿[6命]·大夫[4命]라고 했다.[39] 또한 〈大宗伯〉은 命數에 따라 얻게 되는 위상으로서 1命은 職[1命]-服[2命]-位[3命]-器[4命]-則[5命]-官[6命]-國[7命]-牧[8命]-伯[9命]을 규정했다.[40] 이로써 본다면 기내 관료가 얻을 수 있는 명수와 그 위상에는 4命[器], 6命[官], 8命[牧]이 해당된다. 그런데 정현은 이들 중 官에 대해서, "6命의 卿에게 官을 하사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그 신료를 두어서, 家邑을 제후와 같이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41] 采邑主가 비록 채읍에 머물지 않더라도, 자신의 임명한 신료를 통해 采邑을 통치했다고 본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정현이 독해한 采邑의 통치방식을 그려낼 수 있다. 먼저 중앙에는 업무별로 都鄙를 관장하는 천자의 관원이 있었는데, 都司馬·家司馬 등의 '都'와 '家'가 붙은 관료, 그리고 朝大夫이다. 이들은 천자의 정령을 都鄙에 전달하는 등의 임무를 맡은 중앙의 관원이다. 한편 都鄙에는 상주하는 관료가 실질적인 통치와 행정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采邑主가 별도로 임명한 私臣이었다. 즉 采邑主는 마치 기외 제후의 封建과 같이, 사신을 통해 채읍을 통치했던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현의 향수론에서는 『周禮』의 경문에서 피력된 바 있는 鄕과 遂의 분별이 간과되었고, 오히려 양자는 농업지대이자 동일한 전장이 시행되는 공간으로 동질화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周禮』의 6관마다 천명되었던 '國'과 '野'의 함의 역시 통치체제의 차원에서는 해명되지 못했다. 대신 이를 대신한 '野'의 횡적 양분은 토지제도와 통치방식의 차이와 일치되면서, 기내를 구조화하는 중심적인 틀로 작동하고 있었다.

---

39) 「典命」, 『周禮』 春官宗伯. "掌諸侯之五儀諸臣之五等之命. 上公九命爲伯, 其國家宮室車旗衣服禮儀皆以九爲節. 侯伯七命, 其國家宮室車旗衣服禮儀皆以七爲節. 子男五命, 其國家宮室車旗衣服禮儀皆以五爲節. 王之三公八命, 其卿六命, 其大夫四命, 及其出封皆加一等, 其國家宮室車旗衣服禮儀亦如之."

40) 「大宗伯」, 『周禮』 春官宗伯. "以九儀之命正邦國之位. 壹命受職. 再命受服. 三命受位. 四命受器. 五命賜則. 六命賜官. 七命賜國. 八命作牧. 九命作伯."

41) 「大宗伯」, 『周禮注疏』 春官宗伯. "[鄭玄注] 玄謂, 此王六命之卿賜官者, 使得自置其臣, 治家邑如諸侯."

(2) 親兵 징발지역으로서의 '鄕'

鄕을 관할하는 관료의 직장에는 향의 민인에게 군역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으며, 〈小司徒〉의 군사 편제 규정에서도 향의 민인을 군사로 징발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향을 농업지대로 간주한 정현은 병농일치에 따라 향의 민인에게도 군역이 부과되었다고 보았다.[42]

특히 정현은 鄕·遂의 가호 편제 비법과 〈小司徒〉의 군사 편제 비법이 동일함에 주목했고, 그 이유를 鄕·遂의 가호마다 1인씩이 군사로 징발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하관」 서문에서 규정된 친병은 향에서 징발된 군사로서 구성된다고 했다. 즉 比[5가]-閭[25가]-族[100가]-黨[500가]-州[2,500가]-鄕[12,500가]에서 징발된 인원이 순차적으로 伍[5인]-兩[25인]-卒[100인]-旅[500인]-師[2,500인]-軍[12,500인]의 군사를 이루었다는 것이다.[43] 한편 정현은 천자국 기내의 총 군사 규모가 '6軍'에 한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수에서도 향과 동일한 비법으로 군사가 징발되며,[44] 정목법이 시행된 채지에서도 『사마법』에 의거한 군제가 시행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정현의 독법에는 鄕·遂의 개수와 관련된 주요한 특징도 확인되는데, 바로 '6鄕·6遂'를 천자국의 고유한 제도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정현은 천자의 친병인 '6軍'이 '6鄕' 가호마다 1인씩 징발된 군사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이로써 향과 군의 개수를 일치시켰다.

다만 정현은 제후국의 鄕·遂 개수에 대한 견해를 남기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현과 마찬가지로 '6鄕·6遂'를 천자국의 고유한 향수제로 이해했던 孔穎達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공영달은 5經正義의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尙書正義』는 5경정의 중 하나이며, 그중 「牧誓」·「甘誓」·「費誓」

---

42) 「小司徒」, 『周禮注疏』 地官司徒. "[鄭玄注] (…) 此皆先王所因農事, 而定軍令者也. 欲其恩足相恤, 義足相救, 服容相別, 音聲相識."

43) 「序」, 『周禮注疏』 夏官司馬. "[經文] 凡製軍, 萬有二千五百人爲軍, 王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軍將皆命卿. 二千有五百人爲師, 師帥皆中大夫. 五百人爲旅, 旅帥皆下大夫. 百人爲卒, 卒長皆上士. 二十五人爲兩, 兩司馬皆中士. 五人爲伍, 伍皆有長. [鄭玄注] 軍·師·旅·卒·兩·伍, 皆衆名也. 伍一比, 兩一閭, 卒一旅, 旅一黨, 師一州, 軍一鄕, 家所出一人. 將·帥·長·司馬者, 其師吏也."

44) 「遂人」, 『周禮注疏』 地官司徒. "[經文] 五縣爲遂皆有地域溝樹之使各掌其政令刑禁以歲時稽其人民而授之田野簡其兵器教之稼穡. [鄭玄注] (…) 遂之軍法, 追胥起徒役, 如六鄕."

에 대한 주해에는 그의 향수론이 피력되어 있다. 먼저 「費誓」의 '魯人, 三郊三遂, 峙乃楨榦.'이라는 구절에 대한 공영달의 주해를 보자.

> '三郊·三遂'란 노나라 사람의 3軍을 일컫는다. 『周禮』 〈大司徒〉에 12,500家가 鄕이 된다고 했다. 『司馬法』에서는 12,500人이 軍이 된다고 했다. 『周禮』 〈小司徒〉에서는 "무릇 徒役을 일으킬 때에는 가호마다 1인을 넘지 않는다."라고 했다. 『周禮』에서는 또한 12,500家가 遂가 된다고 했다. 『周禮』 〈遂人〉에서는 "세초에 인민의 수를 헤아리고 병기를 살펴서, 이로써 정역을 일으킨다."라고 했다. 그런즉 6遂에서도 마땅히 6軍이 나오니, 鄕은 正軍이 되고, 遂는 副軍이 될 뿐이다.[45]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공영달의 향수론은 3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가호당 1인의 군사가 징발되었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大司徒〉와 〈遂人〉에서의 가호 편제방식과 『사마법』 및 〈小司徒〉에서의 군역 징발 및 편제방식이 동일함을 제시했다. 둘째로 6鄕에서 징발된 6軍을 '正軍'으로, 6遂에서 징발된 6軍을 '副軍'으로 규정했다. 셋째로 천자국의 경우 6軍이 '정군'이 되지만, 제후국인 노나라는 3군이 '정군'이 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공영달의 견해는 비법의 동일성을 근거로 향수제와 군제를 표리의 제도로 보았다는 점에서 정현의 견해와 같다. 나아가 공영달은 이 같은 독법을 제후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즉 노나라 정군의 규모는 대국이라는 國格에 따라 '3軍'이 되며, 이와 연동하여 노나라의 향수제 역시 3鄕·3遂였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견해하에서 공영달은 노나라 3鄕·3遂의 구조를 해명했다. 아래를 보자.

> 정중이 말하기를, "6鄕의 땅은 왕국으로부터 100리 밖까지에 있다."라고 했다. 그런 즉 왕국으로부터 100리까지는 '郊'가 되고, '鄕'은 '郊'의 내부에 있었으며, '遂'는 '郊'의 밖에 있었다. 『釋地』에서 말하기를, "읍의 밖은 '郊'가 된다."라고 했고, 孫炎은[46] "읍은 국도이다. 100리의 땅에 도성을 세우고, 이로부터 10리까

45) 「費誓」, 『尙書正義』. "[經文] 魯人三郊三遂, 峙乃楨榦. 甲戌, 我惟築. [孔穎達疏] (…) '三郊三遂'謂魯人三軍. 『周禮·司徒』, '萬二千五百家爲鄕'. 『司馬法』, '萬二千五百人爲軍.' 『小司徒』雲, '凡起徒役, 無過家一人.' 是家出一人, 一鄕爲一軍. 天子六軍, 出自六鄕, 則諸侯大國三軍, 亦當出自三鄕也. 『周禮』又雲, 萬二千五百家爲遂. 『遂人職』雲, '以歲時稽其人民, 簡其兵器, 以起征役.' 則六遂亦當出六軍, 鄕爲正, 遂爲副耳."

> 지를 '郊'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런 즉 제후의 제도에서 역시 마땅히 '鄕'은 '郊'의 내부에 있으며, '遂'는 '郊'의 밖에 있다. 경문에서 말한 '三郊·三遂'라는 것은 '三郊'란 '3鄕'이다. 대개 3鄕의 민인으로 하여금 4郊의 안쪽에 나뉘어 살게 하며, 3遂의 민인은 4郊의 바깥쪽에 나뉘어 살게 하는데, 향은 교에 가까우므로 그런 까닭에 '郊'로써 '鄕'을 말한 것이다. 향수의 민인은 도성 밖의 4면에 나뉘어 살므로 마땅히 4郊와 4수가 있어야 함에도 오직 '三郊·三遂'라고 말한 것은, 동교는 머물러 지키게 했으므로 植幹을 쌓도록 명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47]

공영달은 정중의 견해를 근거로 도성 밖 100리까지의 공간인 '郊'에 '鄕'을, 그리고 그 밖의 공간에 '遂'를 위치시켰다. 그리고 『釋地』를 근거로 제후국 역시 도성 밖의 '郊'에 향이, 그리고 그 밖으로 '遂'가 위치함을 논증했다. 특히 공영달은 노나라의 향수제 규모가 '3鄕·3遂'이며, 각각의 민인은 4郊의 안쪽과 바깥쪽에 나뉘어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경문에서 '三郊·三遂'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동교 지역은 留守하는 곳이므로 애초에 민인이 거주하거나 植幹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대의 향수제는 『周禮』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향과 수는 모두 동일한 비법으로 가호를 편제했다 것, 각급마다 官守가 시행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양자의 인적 구성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 그리고 천자국에서의 향수제가 6鄕·6遂로 운영되었다는 것 등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의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자면 향수제의 실상에는 모호한 측면이 많다. 특히 향과 수의 차별적인 성격과 위치는 기내를 '國'과 '野'로 구조화한 『周禮』의 지리적 토대와도 상응해야 한다.

이처럼 다층적인 해석의 결절점 하에서 정현은 향에 농업지대로서의 성격

---

46) 생몰년 미상. 삼국 시대 위나라 樂安 사람으로, 자는 叔然이다. 鄭玄의 제자에게 수학했으며, '東州大儒'라고 불렸다. 『周易例』와 『春秋例』를 비롯해 『毛詩注』, 『禮記注』, 『春秋三傳注』, 『國語注』, 『爾雅注』 등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전하지 않는다. 다만 청나라의 馬國翰(1794-1857)이 당나라 이전에 사라진 저술을 모아 편찬한 『玉函山房輯佚書』에 그 일부가 남아 있다.

47) 「費誓」, 『尙書正義』. "[經文] 魯人三郊三遂, 峙乃楨幹. 甲戌, 我惟築. [孔穎達疏] (…) 鄭衆雲, '六遂之地在王國百裏之外.' 然則王國百裏爲郊, 鄕在郊內, 遂在郊外. 『釋地』雲, '邑外謂之郊.' 孫炎曰, '邑, 國都也. 設百裏之國, 去國十裏爲郊.' 則諸侯之制, 亦當鄕在郊內, 遂在郊外. 此言'三郊三遂'者, '三郊'謂三鄕也. 蓋使三鄕之民, 分在四郊之內, 三遂之民, 分在四郊之外, 鄕近於郊, 故以郊言之. 鄕遂之民, 分在國之四面, 當有四郊四遂, 惟言「三郊三遂」者, 明東郊令留守, 不令峙楨幹也."

을 부여한 대표적인 학자였다. 그리고 비법 상의 동질성을 근거로 향제와 군제를 표리적 제도로 간주했다. 이로써 향과 수를 공읍과 함께 농업지대인 '野' 중에서 천자의 관료에 의해 통치되는 권역으로, 이를 제외한 도비를 기내 봉건의 권역으로 비정했다. 또한 '6鄕·6遂'를 천자국에 한정된 향수제의 규모로 특화했으며, 공영달은 이 같은 독법을 제후국에까지 적용하여 국의 위계에 따라 鄕-遂-軍의 규모가 연동한다고 보았다.

3. 『尙書知遠錄』에서의 鄕遂論

1) '國'으로서의 '鄕'과 '野'로서의 '遂'

유배기의 다산은 삼대의 고법을 궁구하고 있었는데, 핵심적인 논점은 토지제도였다. 이에 대해 다산은 먼저 『周易四箋』에서 '井' 자 구획의 기원을 해명했다. '坤' 卦의 재해석을 통해, 주역이 만들어진 상고시대에서부터 '井' 자가 이미 경계의 방식으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48] 나아가 다산은 '井' 자 구획의 함의를 삼대의 통치체제하에서 해명하고 있었다. 금문 『尙書』에 대한 최초의 주해서로서 『尙書知遠錄』(1811)을 저술했는데, 여기에서 '井' 자 구획을 삼대의 전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원리로서 설명한 것이다. 아래를 보자.

> 나는 夏禹의 법에서 오직 '九'를 사용하여, 井田과 國都는 모두 9개의 구역으로 만들어졌으며, 【禹의 도성도 9개의 구역이었던 까닭에 「甘誓」는 '6鄕의 卿'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4각의 모양은 쓰되 둥근 모양은 쓰지 않은 즉, 〈홍범〉의 '9疇' 역시 반드시 9개의 구역으로 배치되어 그 형태가 정전의 □□□□□□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후에라야 그 상응하고 상관하는 묘리를 비로소 살필 수 있다.[49]

인용문에서 다산은 '洪範9疇'의 외형적 구성 원리를 '井' 字에 보았다. 그리

48) 「坤爲地」, 『周易四箋』 권8 說卦傳. "古者, 畫野分州, 皆爲井地. 「王制」所謂'方百里·方十里', 及〈考工記〉所云'九經九緯'之法, 皆先王所以治地也. 經緯相交者, 布帛之象, 此坤之所以爲布帛也."

49) 「洪範九疇」, 『尙書知遠錄』 권4 洪範 下癸六. "余謂夏禹之法, 惟九是用, 井田·國都, 皆作九區,【禹都九區, 故「甘誓」有六鄕之卿】而仍用方形, 不用圓體, 則此〈洪範〉九疇, 亦必列爲九區, 形如井田□□□□□□□□. 如是然後, 其相應相關之妙, 始有可觀."

고 皇極을 중심에 두고, 주변의 8개 구역에 8疇를 위치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다산은 도성과 기내의 모든 농지[50] 역시 '井' 자로 구획되었다고 보았다. 이상은 그가 '井' 자 구획의 적용 범위를 천자의 통치강령에서부터 토지제도와 도성 건설에 이르는 고법의 영역에까지 확대시켰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산은 향수제를 도성의 구획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井' 자 가운데 列에 왕성을 중심으로 아래와 위에 조정과 시전을 위치시킨 다음, 좌우의 열에 있는 6개의 구역에 6鄕을 비정한 것이다. 또한 도성에는 治者인 士를 비롯해 관서와 시전・공장 등에 종사하는 각종 직역자들이 거주하며, 75,000호에 이르는 이들의 가호가 6鄕에 들어선다고 보았다.[51]

아울러 다산은 9구역의 통치방식에 대해 해명했다. 기내에는 총 9명의 卿이 있는데, 왕궁은 太宰가, 조정은 司寇가, 시전은 司徒가 각각 정무를 관장한다. 또한 좌우의 6鄕에도 1명씩의 卿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鄕大夫이다. 이어 다산은 大祭祀, 大喪事, 蒐田, 徵令, 年初의 巡幸 등과 같이 6鄕에서 시행한 제도 중에서 왕성의 位格에 부합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성격의 제도가 현재의 도성에서도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52]

---

50) 『尙書知遠錄』에서 다산은 삼대의 모든 농지를 '井地'로 간주했는데, 이 같은 그의 삼대 토지제도론을 '삼대정지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 다산은 경전 연구의 심화와 더불어 삼대 토지제도에 대한 견해를 단계적으로 수정해갔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일원적 삼대공전론'과 '이원적 삼대공전론'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일원적 삼대공전론'은 삼대의 농지 구획을 모두 정지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삼대정지론'과 동일하지만, 모든 정지에 공전이 설치되었다고 본 점에서는 '삼대정지론'과 차이가 있다. 한편 '이원적 삼대공전론'은 농지 구획방식을 10구법과 정지로 분별했다는 측면에서 '일원적 삼대공전론'과 차이가 있으며, 다만 각 구획마다의 1구역에 공전이 설치되었다고 본 점은 '일원적 삼대공전론'과 동일하다.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윤석호, 「丁若鏞 經世學의 國家改革論과 農者得田」,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8.

51) 「乃召六卿」, 『尙書知遠錄』 권4 甘誓 下壬六. "六鄕民戶, 不過爲七萬五千. 天子之國, 四方百里, 乃止是乎?六鄕者, 王城之內, 如我邦之五部也. 六鄕三十州, 如我邦五部之四十八坊也. 〈考工記〉, '匠人營國, 方九里.'【仲氏云, '方九里之內, 無以容宮・朝・市, 及七萬五千家, 則二經不相合. 或者九里所函, 大於九井之九里.'】而九分其國, 亦井田形也. 中爲王宮,【左祖右社, 在其內, 故〈宮正〉云, '宮中廟中, 則執燭.'】面朝後市, 九分除其三矣, 其餘六分, 士民居之, 是謂六鄕."

52) 「乃召六卿」, 『尙書知遠錄』 권4 甘誓 下壬六. "故曰'九分其國, 九卿治之.'【〈考工記〉】蓋王宮・朝・市, 別有三卿掌其政, 禁左右六鄕. 六鄕治之, 當如鄕大夫文也. 王宮之事, 冢宰主之, 故宮正屬焉. 面朝之事, 司寇主之, 故朝士屬焉. 後市之事, 司徒主之, 故司市屬焉. 今攷鄕師之職, 大祭祀, 羞牛牲,【惟王城有大祭祀】大喪, 帥其民御匶治役,【我邦此役亦用五部民】蒐田, 則以司徒之大旗致衆庶,【司徒大旗, 惟王城有之】徵令, 以木鐸徇於市朝,【市朝在王城】以歲時巡國及野,【國者, 王城也. 野者, 六遂也】皆是王城之事. 凡在五十里・百里之

무엇보다 다산은 6鄕이 지니는 차별적 위상에 주목하고 있었다. 다음을 보자.

> 대저 6鄕과 6遂의 제도는, 무릇 왕궁과 국도를 건설하는 것에서 반드시 취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선유가 경문을 잘못 해석한 것에 연유하여, 따라서 양법과 미제가 영원토록 폐기되었다. 지금 사람들이 『書經』을 읽으매, 무릇 鄕3物, 鄕8刑, 鄕射, 鄕飮酒, 鄕薦賢能 등의 종류를 外邑의 정사로 인식하여 왕궁과 국도의 내에는 도무지 근거하는 법이 없으니, 어찌 '國'이라 이를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내가 이를 상세히 말했다.【『禮記』「王制」에서는 帥教하지 않는 자를 국의 오른쪽 鄕에서 왼쪽 鄕으로 옮긴다고 했으니, 鄕이 좌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53]

다산은 鄕3物, 鄕8刑, 鄕射, 鄕飮酒, 鄕薦賢能 등의 제도가 본래는 왕성 내의 6鄕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보았다. 교화와 형벌, 교육과 인재선발 등이 모두 6鄕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로써 도성으로서의 '國'은 주권자의 실제적인 통치가 수행될 뿐만 아니라, 통치이념에 부합하는 관료를 양성하는 중심적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한편 다산은 도성 밖으로부터 100리씩을 나누어서 각각 4교-방전-가초-방현-방도의 권역으로 비정하고, 이상의 공간에 비로소 거주했다고 보았다.[54] 즉 기내를 鄕이 위치하는 비농업지대로서의 '國'과, 농민이 거주하는 농업지대로서의 '野'로 양분한 것이다. 이로써 '國[비농업지대]'과 '野[농업지대]'를 분별한 『周禮』의 토대적 구조에 부합하도록 鄕과 遂의 성격과 위치를 비정했다.

덧붙여 살펴볼 것은 기내의 통치방식에 대한 견해이다. 〈禹貢〉의 '百里采'라는 구절에 대한 그의 주해를 보자.

地者, 無以然矣. 六鄕所在, 非卽王城乎?【鄕師, 如我邦之漢城尹】〈小司徒〉云, '大比六鄕四郊之吏.' 六鄕之非四郊, 亦已審矣.【百里之內, 謂之四郊】"

53) 「乃召六卿」, 『尙書知遠錄』 권4 甘誓 下壬六. "大抵六鄕·六遂之制, 凡建王宮·國都者, 所必取法. 而緣先儒誤解經文, 遂使良法美制, 永見廢棄. 今人讀書, 凡鄕三物·鄕八刑·鄕射·鄕飮酒·鄕薦賢能之類, 認之爲外邑之政, 而王宮·國都之內, 都無可據之法, 而可爲國乎? 余故詳言之.【「王制」, 不帥教者, 自國之右鄕, 移國之左鄕. 鄕在左右, 審矣】"

54) 「厥賦惟上上」, 『尙書知遠錄』 권4 禹貢 下辛一. "[天官·冢宰] 以九賦斂財賄, 一曰邦中之賦,【鄭云, 在城郭者.】 二曰四郊之賦,【去國百里者】 三曰邦甸之賦,【二百里】 四曰家削之賦,【三百里】 五曰邦縣之賦,【四百里】 六曰邦都之賦,【五百里】 (…) ○鏞案, 邦中之民, 亦皆市井末流, 非農民也. 農民, 唯五甸而已."

【梅氏는 "왕에게 공궤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蔡氏는 "'采'라는 것은 경·대부의 읍이다."라고 했다.】 王畿 1,000리는 선왕이 정한 제도이다. 1,000리의 밖에 또한 100里를 취하여 이로써 경·대부의 采邑을 만드는 것이 이치가 있겠는가? 『周禮』에서 말한 가초·방현·방도에서의 賦는 기내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며, 이것은 모두 王人의 채지였다. 그런 까닭에 〈載師〉에 대한 鄭玄의 주해에서, "가읍은 대부의 채지이고,【초지이다.】 소도는 경의 채지이고,【현지이다.】 대도는 공의 채지이다.【강지이다.】"라고 한 즉, 4郊의 밖은 채지가 아닌 것이 없으니,【『周禮』에서는 전지에 공읍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혹 왕자제가 먹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 鄭玄의 주해는 옳지 않다.】 어찌 후복의 땅에서 또한 100里를 취하겠는가? 周·召·毛·聃·畢·原 등은 采邑을 먹은 것으로, 모두 기내에 있었다.【『儀禮』의 注에 있다.】[55]

다산도 인용했다시피 매색과 채침은 采邑이 기내·기외에 모두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산은 4郊에서부터 기내 전역에는 채읍이 아닌 곳이 없고, 채읍은 오직 기내에만 있다며 선유의 견해를 비판했다. 또한 채읍의 수득자를 천자 자신과 함께 王人[관료와 王子弟]으로 간주했으며, '食'이라는 표현을 통해 채읍의 물질적 형태가 수조권에 한정됨을 표명했다.

이상과 같이 『尙書知遠錄』 단계의 다산은 제후의 분치가 시행된 봉건을 기외에 한정하는 한편, 기내에는 수조지로서의 채읍만이 설치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수조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이나 견해를 피력하지 않고 있었다.

2) 親兵 징발지역으로서의 '遂'

『尙書知遠錄』에서 다산은 '鄕'의 성격과 위치에 대해서는 선유와 견해를 크게 달리했으나, '6鄕·6遂'가 천자국의 고유한 향수제라는 데 있어서는 동의

55) 「百里采」, 『尙書知遠錄』 권4 禹貢 下壬二. "【梅云, '供王事而已.' ○蔡云, '采者 , 卿大夫邑地.】王畿千里, 先王之定制也. 千里之外, 又取百里, 以作卿大夫之采邑, 有是理乎? 『周禮』家稍·邦縣·邦都之賦, 明在畿甸之內, 此皆王人之采地也. 故鄭註〈載師〉云 : "家邑, 大夫之采地.【卽稍地】 小都, 鄕之采地,【卽縣地】 大都, 公之采地.【卽畺地】 " 則四郊之外, 無非采地,【『周禮』以公邑之田任甸地, 此或王子弟所食. 鄭註則不然】 何得侯服之土, 又取百里? 周·召·毛·聃·畢·原之屬, 其所食采邑, 皆在畿內,【見『禮』注】 未聞氾濫橫決, 如注所云也. 梅說本出馬融.【見『古訓』】 ○『周禮』九畿, 侯·甸·男畿之外, 乃有采畿, 是亦卿大夫之采地乎?"

했다. 이는 「費誓」의 '魯人, 三郊・三遂.'에 대한 주해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 다산은 먼저 정중과 채침, 그리고 임지기의 견해를 소개했는데, 이들은 정현이나 공영달과 마찬가지로 왕성으로부터 100리까지를 郊라고 보고, 郊의 내부에 鄕이, 郊의 외부에 遂가 위치한다고 했다. 그리고 '6鄕・6遂'는 천자의 고유한 향수제이며, 노나라는 대국이라는 國格에 따라 3軍과 3鄕・3遂가 설치되었다고 했다. 이상에 대해 다산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 크게 그렇지 않다. 천자의 6鄕은 왕성의 안에 있는 즉.【「甘誓」 조에 뜻이 보인다.】 제후의 3鄕은 역시 도성 내에 있다. 6鄕이라는 것은 6遂로써 돕는 즉, 3鄕은 3遂로써 도우니, 이것이 진실로 제후의 제도이다. 교를 3개로 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천자와 제후는 모두 4郊가 있는데, 다만 도읍의 밖 100리 내를 4郊라 한다.【『周禮』에 보인다.】 여기서 3郊라 말한 것은 동교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3郊와 3遂는 비록 이어진 문장이지만, 3이라는 이치는 곧 교와 수가 같지 않으니, 어찌 섞을 수 있겠는가? 향의 밖은 수이고[도성 밖을 둘러싼 것을 수라고 한다.] 수의 밖은 교이니, 공[공영달]이 향을 교로 만들려고 한 것은, 역시 어긋나지 않았겠는가? 천자의 제도는 왕성 좌우에 각각 3遂가 있다. 대국의 제도는 도성 좌우에 각각 1수 반씩이 있다.[56]

인용문에서 다산은 선유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논점은 鄕과 遂의 위치에 한정되고 있다. 향이 도성 내에 위치함을 지적할 뿐, 鄕・遂의 개수에 대해서는 선유와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다산은 천자국의 6鄕은 6遂가 돕지만 노나라의 경우 3遂가 3鄕을 돕는다면서, 이를 제후의 제도라고 해명했다. '國'의 위계에 따라 鄕・遂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다산이 鄕・遂의 개수에 대한 선유의 견해를 따른 것은, 이 같은 독법의 근저에 내재된 논리까지를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천자는 6鄕・6遂인 까닭에 6軍이며, 대국은 3鄕・3遂인 까닭에 3군이다."라고[57] 하여, '國'의 규

---

56) 「魯人三郊三遂」, 『尙書知遠錄』 권7 費誓 下戊八. "大不然也. 天子六鄕, 在王城之內,【義見「甘誓」條】則諸侯三鄕, 亦當在都城之內. 六鄕者, 副以六遂, 則三鄕者, 副以三遂, 此固諸侯之制也. 至於郊之爲三, 非以是也. 天子諸侯, 皆同四郊, 但以都邑之外, 百里之內, 謂之四郊.【見『周禮』】此云三郊者, 東郊不開也. 三郊三遂, 雖若聯文, 其所以三之理, 則郊與遂不同, 何可混也? 鄕外曰遂,【環都城之外曰遂】遂外曰郊, 孔乃欲以鄕爲郊, 不亦謬乎? 天子之制, 王城左右各有三遂. 大國之制, 都城左右, 各一遂有半也."

모에 따라 鄕·遂 개수와 군대 개수가 연동된다고 보았다. 또한 '魯人, 三郊·三遂.'에서 '3遂'는 노나라의 3軍이 징발된 지역을 의미하며, '3郊'는 동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교문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결국 이 같은 해석은 그가 遂와 軍이 지니는 비법 상의 동질성을 근거로, 遂의 가호마다 1인의 군사가 징발되어 軍을 구성했다고 보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선유와의 차이점이라면, 鄕을 비농업지대로서 도성에 위치시켰으므로 친병이 징발되는 지역을 鄕이 아닌 遂로 보았다는 것에 있다.

덧붙여 살펴볼 것은 軍將을 누가 역임했는가의 문제이다. 『周禮』에서는 군장의 관품을 卿으로 규정했으나, 한편으로는 6관의 관직체계 내에 군장으로서의 관직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卿에 해당하는 관료 중에서 누군가가 군장의 지위를 겸직했음을 추론케 하는데, 문제는 누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되었는가이다. 이는 『尙書』 경문의 독해에서도 난점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甘誓」가 그러하다.

禹王의 아들인 啓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독 有扈氏가 복종하지 않았다. 이에 啓는 군사를 모아 有扈氏를 정벌하러 갔는데, 이때 甘에서 휘하 장졸들에게 선언한 내용이 바로 「甘誓」이다. 경문은 "甘에서 크게 싸우실 때, 마침내 6卿을 부르셨다. 왕이 말씀하시길, '아! 6事의 사람들아. 내 맹세하여 너희들에게 고하노라.'고 했다."라는[58] 구절로 시작한다. 이때 啓가 소환한 6卿이 누구이며, 당시의 관료체계가 어떠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선유는 '6事'는 '6軍'이며, 당시 卿의 관품에 해당하는 관직자가 군장을 겸직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대체로는 향대부가 군장을 겸임했다고 보았는데, 대표적으로 채침이 그러했다.[59]

하지만 다산의 견해는 채침과 다소 달랐다. 향대부는 덕망으로 임명된 관리이므로, 무력이 반드시 쓰이는 군려의 일에 향대부가 장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60] 다산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는 향을 비농업지대이자 교육·교

57) 「司徒·司馬·司空·亞旅」, 『尙書知遠錄』 권4 牧誓 下癸四. "天子六鄕·六遂, 故六軍. 大國三鄕·三遂, 故三軍.【據「費誓」】 此擧三卿者, 三軍之將也.【詳上「甘誓」條】"
58) 「甘誓」, 『尙書』. "大戰于甘, 乃召六卿. 王曰, '嗟! 六事之人, 予誓告汝. (…)'"
59) 「甘誓」, 『書經集傳』.

화의 특화된 공간으로 상정했던 그의 입장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尙書知遠錄』 단계의 다산은 향대부를 군장과 완전히 절연하지는 못했다. 「牧誓」에 대한 다음의 주해를 보자.

> 武王 이전에, 6鄕은 卿으로서 왕성 내에 있은 즉 鄕大夫로 삼았고 出師해서는 軍將으로 삼았던 까닭에, 「牧誓」에서는 '3鄕'을 불렀으나 다시 3軍의 將은 없었던 것이다.【「甘誓」의 법과 같다.】 춘추시대에는 사람을 택하여 군장으로 삼았다. 또한 3인을 택하여 아장으로 삼았다. 또한 6인이 있어 3군의 대부로 삼았다.[61]

「牧誓」는 武王이 紂王을 '牧野'에서 토벌한 뒤 천명한 맹세이다. 그중에는 무왕이 冢君과 司徒・司馬・司空 이하의 관료를 호명하는 구절이 있다.[62] 인용문에서 다산은 이때의 司徒・司馬・司空의 관료제적 지위를 군제와 연관시켜 해명했다. 특히 그는 무왕까지와 그 이후의 제도가 상이했다고 보았다. 먼저 다산은 「牧誓」 당시 무왕은 아직 제후의 지위였으므로, 주나라의 鄕・官・軍의 개수는 모두 3개라고 보았다. 그리고 무왕까지는 鄕大夫가 관장과 군장을 겸직했으며, 이는 무왕 이전의 시기를 다룬 「甘誓」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한편 다산은 무왕 이후로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즉 이전까지 향대부가 군장을 겸임했던 것과 달리, 춘추 이후로는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 군장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산은 『周禮』가 천명한 '國'과 '野'의 구조 위에 비농업지대와 농업지대, 치자의 거주지와 피치자의 거주지 등의 체제적 원리를 중층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었다. 이 같은 독해가 가능했던 것은 鄕을

---

60) 「乃召六卿」, 『尙書知遠錄』 권4 甘誓 下壬六. "六軍雖出於六鄕, 出師之時, 鄕大夫之必爲其將, 『周禮』無文, 蔡註未必然也. 平時六鄕之卿, 苟有德望, 皆可爲之. 軍旅之事, 必用武力, 奚必鄕大夫爲將?六鄕之制, 因可講也. 鄭司農以百里之內爲六鄕, 百里之外爲六遂,【〈鄕老〉註】鄭玄從之. 蓋以六鄕賞地, 或在於遠郊,【〈司勳〉・〈載師〉文】故曲解如是. 賈逵・馬融以五十里之內爲六鄕, 五十里之外爲六遂,【〈鄕老〉疏】比鄭雖賢, 亦五十步百步之間耳. 章句腐儒, 閉門注經, 其迂陋如此."

61) 「司徒・司馬・司空・亞旅」, 『尙書知遠錄』 권4 牧誓 下癸四. "武王以前, 六鄕之卿, 在內則爲鄕大夫, 出師則爲軍將, 故「牧誓」仍召三鄕, 更無三軍之將.【如「甘誓」之法】春秋之時, 臨軍擇人, 以爲軍將. 又擇三人, 以爲亞將. 又有六人, 爲三軍大夫."

62) 「牧誓」, 『尙書』. "王曰, 嗟! 我友邦冢君, 御事司徒・司馬・司空, 亞旅・師氏, 千夫長・百夫長, 及庸・蜀・羌・髳・微・盧・彭・濮人."

비농업지대로서 國[도성]에, 遂를 농업지대로서 野의 일부에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周禮』의 경의에 내재한 鄕과 遂의 분별적 성격을 기내의 구조 속에서 해명한 것이며, 동시에 향수제에 대한 선유의 두꺼운 해석적 전통을 비판한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이 시기의 다산은 '國'의 위계에 따라 '鄕·遂·軍·官'의 수가 연동한다고 했다. 또한 鄕大夫가 교화와 교육을 전담했다고 보았음에도, 그 관료적 지위를 군장의 겸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내의 채읍이 수조지임을 표명했으나, 통치방식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견해를 피력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선유의 학문적 자장이 남아 있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만년의 견해에 비추어 변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4. 『尙書古訓』까지의 鄕遂論 변화 추이

1) 親兵 징발지역의 확대

『尙書古訓』은 『尙書古訓蒐略』 이래로 지속된 다산의 금문 『尙書』 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다산이 죽기 2년 전인 1834년에 저술되었다. 따라서 『尙書古訓』은 삼대의 고법에 대한 최후이자 가장 정돈된 견해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尙書知遠錄』에는 그의 향수론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므로, 20년 남짓이 지나 저술된 『尙書古訓』에서는 그동안의 변화를 거친 향수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尙書知遠錄』에서의 향수론이 『尙書古訓』의 저술에 즈음하여 급격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양 저서 사이의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산은 수많은 경전과 주해를 폭넓은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향수론을 비롯한 고법이해는 단계적으로 변화해갔는데, 그 양상과 추이는 이 기간 동안의 저작 곳곳에 여실히 담겨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尙書知遠錄』 이후로부터 『尙書古訓』에 이르는 동안의 다산 저작들을 대상으로, 그의 향수론이 변화해간 양상과 추이, 그리고 그 함의를 계기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논점은 親兵의 징발지역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1-1. 6遂는 75,000家이다. 9家마다 전지 10夫【100畝가 10개이다.】를 농사하는 것인 즉, 9,000家는 전지 1만 夫【100畝가 10,000개이다.】를 농사하며, 75,000家는 전지 83,033夫를 함께 농사하게 된다. 그 중 1/10이 公田이니, 10×10으로 開方해도 사방 100리는 되지 않는다.【부족한 전지가 7成 남짓하다.】63)

1-2. 6遂에 民戶가 75,000家인데 그들에게 전지를 주는 법은 良田 100畝를 주고, 또한 萊田을 주니 적으면 50畝, 많으면 200畝가 되었다. 만약 山林・川澤・溝瀆 따위가 또 그 안에 있으면 사방 50리 안에는 이런 전지를 용납할 수 없을 듯하다. 이것이 郊와 遂의 경계를 분할하는 데에 일정한 明文이 없게 된 까닭이다.64)

두 인용문에서 다산은 6遂의 가호 전체를 農者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經世遺表』 전체 중에서 6遂를 이처럼 전농업지대로 서술한 것은 위의 두 사례뿐으로, 곧 살펴보겠지만 나머지에서는 6遂를 농자와 여타의 직역자가 섞여 있는 9직의 혼재지로 설명했다.

이처럼 『經世遺表』에서 다산은 6수 거주민의 직역구성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개진해 놓았는데, 아쉽게도 양자의 선후관계 및 체제적 차이점 등을 해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尙書知遠錄』의 향수론에는 이를 추론할 만한 단서가 있는데, 바로 遂와 軍의 개수가 연동한다던 그의 견해이다. 당시 다산은 遂의 모든 가호마다 1인씩이 징발되어 親兵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는 遂의 가호 모두를 군역을 지는 농민으로 간주한 것으로, 이는 6遂를 전농업지대로 설명했던 위의 두 사례에서와 동일한 입장이다.

이로써 본다면 6수가 전농업지대라는 독법은 다산의 초기 향수론 하의 견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어떠한 이유에서 6수를 9직의 혼재지라고 재해석했나이다. 이 역시 친병과의 관련성 하에서 추론해볼 수 있는데, 아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63) 「田制1」, 『經世遺表』 권5 地官修制. "六遂, 七萬五千家. 每以九家治田十畎,【百畝十】則九千家治田萬畎,【百畝萬】七萬五千家共治田八萬三千三十三畎. 其什一, 乃公田也. 十十開方, 不能爲方百里.【所不足者, 田七成有餘】"

64) 「田制2」, 『經世遺表』 권5 地官修制. "六遂民戶七萬五千家, 而其授田之法, 良田百畝之外, 又授萊田, 少者五十畝, 多者二百畝. 若有山林・川澤・溝瀆之等, 又在此中, 則四甿五十里之內, 恐無以容此田地. 此所以郊・遂割界, 別無一定之明文也."

2-1. 생각건대, 周의 법은 軍과 農이 하나로 합해있었다. 그런 까닭에 軍旅에 대한 일은 오로지 6遂에 의뢰했다. 遂人이 田野를 주고 병기를 선택하며 夫家의 많고 적음을 정해서 사냥[師田]하도록 했고, 遂師는 군려와 田獵에 그 상벌을 관장했으니, 6遂는 天子의 親兵이 있는 곳이었다. 魯公 伯禽이 淮夷를 정벌할 적에도 오직 三郊와 三遂에서 군사를 조발했으니,【「費誓」에 있다.】 나라를 호위하는 데에 반드시 교와 수로 한 것이 이와 같았다.65)

2-2. 생각건대, 周의 예에서는, 무릇 도를 배워서 벼슬하는 자는 위로 大夫·三士로부터 아래로 府史·胥吏까지 모두 왕성 안에 있었는데, 이를 6鄕이라 일렀으며, 온갖 工匠, 여러 기술자와 장사치 등도 또한 그 안에 있었다. 6遂 이외에 비로소 농민이 있었고, 다른 직업을 가진 자도 섞여 있었으므로 井으로 묶지는 않았다. 그러나 遠郊 밖에서 甿畿까지는 순전히 농민만 살고 다른 業은 섞이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그 村里의 제도를 마련하면서 田地로 묶어서, 4井은 邑이, 4읍은 丘가, 4구는 甸이, 4전은 縣이, 4현은 都가 된다 하였다.【〈小司徒〉에 있다.】 전지를 나누고 賦를 내며, 군사를 징발하고 수레를 내는 데에 모두 법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先王의 법이었다.66)

2-1에서 다산은 「費誓」의 '3郊·3遂'를 군제 하에서 해명하고 있다. 먼저 군역 부과의 대원칙으로서 兵農一致를 제시했으며, 이어서 기내 전역의 농병 중에서 천자 예하의 군대로서 별도로 차출된 병사를 '親兵'이라 명명했다. 주목되는 점은 친병의 징발 지역을 遂와 郊로 비정했다는 것과, 그 대표적인 사례로 「費誓」의 '3郊·3遂'를 꼽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시기의 다산은 『尙書知遠錄』에서와 같이 노나라 遂의 개수를 3개로 간주했으나, 『尙書知遠錄』과는 달리 3군의 징발 범위를 郊로 확대했다.67)

---

65) 「田制12」, 『經世遺表』 권8 地官修制. "臣伏惟周人之法, 兵農合一, 故軍旅之事, 專仗六遂. 遂人授之田野, 簡其兵器, 登其夫家, 以令師田. 遂師軍旅田獵, 掌其賞罰. 六遂者, 天子親兵之所在也. 魯公伯禽, 將伐淮夷, 亦唯三郊·三遂, 是調是發,【見「費誓」】 衛國之必以郊·遂如是也."

66) 「田制10」, 『經世遺表』 권8 地官修制. "臣伏惟周人之禮, 凡學道以從仕者, 上自大夫·三士, 下至府·史·胥·徒, 皆居王城之內, 謂之六鄕. 百工·衆技·商賈之等, 亦在此中. 六遂以外, 始居農民, 亦有他職他業, 參錯其間, 故不以井束之. 遠郊以外, 達於甿畿, 純居農民, 不雜他業. 故其村里之制, 以田束之, 曰'四井爲邑, 四邑爲丘, 四丘爲甸, 四甸爲縣, 四縣爲都'.【〈小司徒〉】 分田出賦, 調兵出車, 皆有法式, 此所謂先王之典也."

67) 인용문과 동일한 독법은 다음에서도 확인된다. 「田制4」, 『經世遺表』 권6 地官修制. "○臣謹案 六遂之軍, 擺列近郊, 以衛王城. 故井田之外, 別授萊田. 〈大司馬〉所言者, 亦六遂之軍也. 遠郊以外, 雖無萊田, 其以佃額而爲軍額則同. 「費誓」曰, '魯人三郊·三遂.' 郊·遂之軍, 皆親兵也."

문제는 遂를 전농업지대로 간주할 경우, 위에서와 같이 친병의 징발 지역을 郊로 확장하게 되면 경문에 정해진 친병의 규모보다 징집되는 군사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병의 규모에 부합하도록 수와 교에서 징발되는 군사의 수를 산술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한다면, 2-2는 이에 대한 다산의 해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전과는 달리 6遂를 9직의 혼재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遂와 郊의 농민으로 구성된 군사의 규모가 친병의 규모에 부합할 여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산의 친병 징발 범위의 확대는 위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래를 보자.

> 3-1. 옛적에는 12,500명을 1軍으로 했고, 大國의 3軍은 37,50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 3軍을 다 도성 안에서 양성하는 것이 아니었고, 온 나라 田賦를 통계해서, 여러 고을에 흩어져 있었다. 따라서 도성 안에서 병졸 10,000명을 양성하는 것은 오히려 많다 하겠다. 지금 12省 監司에게 병졸 1,000명씩을 양성하도록 하고, 10路 兵馬使에게도 병졸 1,000명씩을 양성하도록 한다면 벌써 22,000명이 된다. 큰 州에는 3초씩을 양성하고 여러 군에는 1초씩을 양성한다면 또 수만 명이 될 터이니 어찌 큰 나라의 3군 제도뿐이겠는가? 지금 작은 縣의 束伍軍도 모두 5-6초는 되지만 양성은 하지 않고 군적에만 편입시켰으니 모두 헛된 명부뿐이다. 헛된 명부에 10,000명이 올라와 있는 것은 실제 양성한 군사 10명을 두는 것만 같지 못하니, 빈약한 것을 병통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나머지는 〈軍制〉에 자세히 기록하였다.[68]

3-1에서 다산은 기내 전역의 농병 중에서 일부가 차출되어 「하관」의 군대[6軍・3軍]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는 2-1에서 '친병'을 설명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3-1에는 주요한 2가지의 변화가 함께 확인되는데, 하나는 친병의 징발 지역을 기내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내의 각 지역마다 전부에 비례해 농병 중의 일부를 친병으로 징발했다는 것이다.

---

68) 「都統營」, 『經世遺表』 권2 夏官兵曹 第四. "○古者, 萬二千五百人爲一軍, 大國三軍, 則三萬七千五百人也. 然此三軍, 非盡養之於國城之中也, 通一國之田賦, 散在諸邑. 由是言之, 國城之內, 養兵萬人, 猶爲多矣. 今擬十二省監司, 各養兵千人, 十路兵馬, 使各養兵千人, 則已二萬二千人矣. 大州各養兵三哨, 諸郡各養兵二哨, 諸縣各養兵一哨, 則又數萬人矣. 豈止大國三軍之制而已? 今小縣束五之軍, 皆不下五・六哨, 然不養而編於籍, 皆虛名而已. 與其有虛名萬人, 不若置實養十人, 不可以寡弱爲病也. 餘詳軍制."

이처럼 변화된 독법은 만년의 『尙書古訓』에도 동일하게 표명되었다. 아래를 보자.

> 3-2. 후대의 유자가 혹 '천자는 6軍이고, 6鄕에서 나온다.'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공영달[沖遠]은 또한 3郊와 3遂로서 대국의 군사가 나오는 곳을 삼았는데, 또한 역시 그렇지 않다. 주나라의 제도에서 병은 농으로부터 나오는데, 6鄕 내에는 본디 하나의 농지도 없으니 하나의 졸과 하나의 군을 어찌 만든단 말인가? 6遂를 시작으로 하여 4경에 이르기까지 무릇 전이 있는 땅은 모두 3군이 나오는 바이며, 6軍도 역시 그러하니, 3자와 6자를 짝지어 같다고 하여 이와 같이 배합할 수 없다.69)

3-2에서도 다산은 먼저 병농일치의 대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기내 전역의 농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지워져 있었음과 함께, 6鄕은 비농업지대로서 도성에 위치하므로 군병의 징발대상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다산은 천자의 6軍이 기내의 전역의 농병 중에서 선발되었으며, 이는 大國의 3軍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요컨대 이 시기의 다산은 중앙에서 기내 전역에서의 농지와 가호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주권자[천자 혹은 제후] 직속의 군대가 전국적 범위에서 농지와 가호에 비례해 균등하게 징발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2) 기내봉건의 부정과 官守 방식의 일원화

『尙書知遠錄』에서 다산은 기내의 채읍이 수조지로서의 성격을 띠며, 그 수득자를 王人[관료 혹은 왕자제]이라고 간주했다. 하지만 채읍의 통치방식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經世遺表』에 이르러서는 채읍에서의 통치방식을 기외 封國과의 분별하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먼저 아래를 보자.

> 그러므로 나는 公邑이란 天子의 祿田이고, 家邑이란 公·卿·大夫의 祿田이며, 士田이란 3등 適士의 祿田이고, 官田이란 府史·胥徒의 祿田이며, 小都란 勳臣과 同姓이 봉함을 받는 땅이고, 대도란 親王의 子弟가 受封하는 땅이라 말한다. 그러나 受封도 封君에 그치고 國君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옛 제도이다. 位가 낮은

69) 「甲戌 (…) 汝則有大刑」, 『尙書古訓』 권7 費誓. "後儒或云'天子六軍, 出於六鄕.' 故沖遠又以三郊·三遂爲大國三軍之所出, 亦不然矣. 周制, 兵寓於農, 而六鄕之內, 本無一之田, 一卒一車, 何以調矣? 六遂爲始, 達於四境, 凡有田之地, 皆三軍所出, 六軍亦然, 不可以三六字偶同, 配搭如是也."

자에게는 가까운 지역을 주고 위가 높은 자에게는 먼 지역을 주어, 힘의 大小를 요량하고 곡식의 多少를 비교해서 지위가 낮은 자에게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70]

인용문에서 다산은 采邑의 수득자를 보다 폭넓게 비정했다. 관료[公・卿・大夫・適士・府史・胥徒], 훈신과 동성, 왕자제 등은 물론이고, 천자 역시 채읍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된 채지로서 각각 〈載師〉의 가읍[관료], 소도[훈신과 동성], 대도[왕자제], 공읍[천자]을 대응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다산은 采邑主의 지위가 封君에 그칠 뿐 國君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채읍의 통치방식을 국군에 의해 통치되는 기외의 封國과 구분한 것이다.

나아가 다산은 '井田論3'에서 封國에 대비되는 采邑에서의 통치방식을 해명했다.[71] 이에 따르면, 먼저 公邑은 王靈과 가까운 천자의 수조지로서 田役을 供上했으며, 家邑은 公・卿・大夫의 수조지로서 采邑主가 采邑을 保守했다고 보았다. 또한 都鄙[小都・大都]의 경우 읍성을 만들고 동성과 왕자제 등을 封君했는데, 封君한 경우라도 君이 아닌 宰가 采邑을 통치할 수 있었다고 했다. 더구나 采邑을 만들지 않은 곳도 宰가 다스릴 수 있었으며, 그 예로 中都의 宰가 된 孔子, 武城의 宰가 된 子游, 單父의 宰가 된 宓子賤을 들었다.

주목되는 것은 다산이 守宰의 경전적 근거를 『周禮』의 〈太宰〉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都鄙를 다스리는 '8則'[72] 중 하나로 언급된 '官'을 근거로, 도비에서의 官守가 제도화되었음을 추론한 것이다. 무엇보다 다산은 이때의 '官'을 현실의 郡守나 縣令과 같은 직책으로 해석하여, 都鄙에서의 官守를 郡縣制의 통치방식에 비견했다.[73]

이상의 독법은 『周禮』의 경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내 전역에서의

---

70) 「田制3」, 『經世遺表』 권5 地官修制. "臣故曰 公邑者, 天子之祿田, 家邑者, 公・卿・大夫之祿田, 士田者, 三等適士之祿田, 官田者, 府・史・胥・徒之祿田, 小都者, 勳臣・同姓受封之地, 大都者, 親王子弟受封之地. 然其受封者, 止爲封君, 不得爲國君, 此古制也. 位卑者, 授之以近地, 位高者, 授之以遠地, 量力之大小, 較穀之多少, 使卑者便也."

71) 이하 「井田論3」, 『經世遺表』 권5 地官修制 田制1.

72) 「太宰」, 『周禮』 天官冢宰. "以八則治都鄙, 一曰祭祀, 以馭其神, 二曰法則, 以馭其官, 三曰廢置, 以馭其吏, 四曰祿位, 以馭其士, 五曰賦貢, 以馭其用, 六曰禮俗, 以馭其民, 七曰刑賞, 以馭其威, 八曰田役, 以馭其衆."

73) 「井田論3」, 『經世遺表』 권5 地官修制 田制1. "縣・都之宰, 有官有吏有士有民, 仰而事神, 俯而馭衆, 與今之郡守・縣令, 其職相同."

官守를 해명했다는 특징이 있다. 부연하자면, 『周禮』는 가호의 계서적 편제와 官守를 鄕과 遂에서만 제도화시켰는데, 다산은 이 같은 『周禮』의 경의를 따라 6수의 전장이 오직 6수에서만 시행된다고 간주했다. 다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도비[채읍]에서도 6수와는 다른 방식의 관수가 시행했다고 보았다. 이에 토지 제도인 정목법 하에서 촌락도 함께 편제되었다고 간주했다. 또한 도비에서의 관수를 해명함에 있어서도 여타의 경문을 무리해서 원용하지 않았다. 대신 도비의 '8則'을 그 전거로 활용했고, 아울러 『春秋』와 『論語』 등에서 보이는 '宰'를 근거로 도비에서의 官守를 예증했다. 요컨대 기내 전역의 민인이 관료제 하의 공적 권력 하에서 편제 및 통치되었으며, 다만 그 방식에 있어 6수와 채읍이 달랐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經世遺表』 내에는 위의 견해와 뚜렷이 구분되는 기내의 통치방식 또한 피력되어 있다. 바로 〈匠人營國圖〉의 내용으로, 다소 길지만 이를 확인해보자.

> 살피건대, 『周禮』에는 무릇 郊野를 통틀어 遂라 일컬었다. 왕성에 붙은 것을 6遂라 이른 것은 그 본디 수효가 다만 6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는가? 〈遂人〉 조에 이르기를, "遂人이 나라의 郊野를 관장하는데, 토지의 圖本으로써 田野의 經界를 정리하며, 縣鄙의 형체를 조성하는 법은 5호가 鄰, 5인은 里, 4이는 酇, 5찬은 鄙, 5비는 縣, 5현은 遂【鄭玄은, '鄰・里・酇・鄙・縣・遂는, 比・閭・族・黨・州・鄕와 같다.'고 했다.】가 각각 된다." 하였다. 이리하여 鄕黨의 제도와 안팎이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그런데 遂 이외의 지역은 그대로 논한 것이 없으니, 왕성 6鄕 이외 지역을 통틀어서 遂라 일컬은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周나라 제도는 왕성 안을 邦中으로, 100里 안을 郊地로, 200리 안을 甸地로, 300리 안을 稍地로, 400里 안을 縣地로, 500리 안을 畺地로 각각 했다.【天子의 畿內는 4방 천리이니 사방을 향하면 500里에서 그쳤다.】 이것이 〈載師〉 조에 있으나 甸・稍・縣・畺에는 官守가 도통 없었으니, 酇・鄙・縣・遂로 하는 제도로 사방에 통했던 것이 이미 분명하지 않은가? 遂에는 大夫【中大夫 한 사람】가 있고, 현에는 縣正【下大夫 한 사람】이 있으며, 鄙에는 鄙師가, 찬에는 酇長이, 이에는 里宰가 있으며,【상・중・하의 三士】 인에는 鄰長이 있었으니,【士로서 삼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즉 縣地와 畺地가 같이 있는 것이었다. 오직 〈遂人〉 조에, "큰 喪事에 6遂를 거느려서 役事를 돕는다."라고 하여, 遂는 다만 여섯이 있어 鄕이 다만 6개인 것과 같이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후세에 鄕遂 제도를 논한 자는 드디어 6鄕과 6遂가 서로 짝한다고 말하여, 縣遂制가 사방 경내에 통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다만 6鄕

에 鄕老【公 3명】·鄕師【하대부 4명】가 있는 것처럼 왕성 부근 6遂의 지역에는 별도로 遂人【중대부 2명】과 遂師【하대부 4명】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점이었다.74)

인용문에서 다산은 가호의 편제방식, 등급별 편제마다의 관수, 이를 총괄하는 遂人 등에 이르는 6遂의 통치방식이 기내 전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기내의 모든 가호가 관료제에 의한 천자의 균질적이고 계서적인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독법은 『尙書古訓』에서 보다 정연하게 설명되고 있다.

4-1. 천자의 6鄕은 왕성의 안에 있고, 좌우에 각각 3鄕이 있다. 6遂는 왕성의 밖에 있고, 좌우에 각각 3遂가 있다. 수 이외를 4郊라 부르며, 4郊의 밖은 강기에 이른다.【500리이다.】 모두 6遂에 예속되고, 6遂의 법으로 묶이며, 수사와 수대부에 속하는데, 이것이 주나라의 제도이다.75)

4-2. 鄕의 밖을 遂라고 하는데, 6遂의 백성은 75,000을 넘지 않는다. 다만 遂人의 직임이 교야에서 4방에 이르니, 비록 6遂의 밖이라도 모두 遂人에 예속된다. 그런 까닭에 〈遂人〉에서 '나라의 야를 관장한다.[掌邦之野]'는 것은 무릇 전야의 일을 관장함을 말하는 것이지, 6遂의 땅이 이윽고 4방의 경계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76)

---

74) 「三班官制」, 『經世遺表』 권3 天官修制. "臣謹案, 『周禮』凡郊野之地, 通名爲遂, 第以其附於王城者, 謂之六遂, 非其本數止有六箇也. 何以知其然也? 〈遂人〉云, '遂人掌邦之野, 以土地之圖經田野, 造縣鄙形體之法. 五家爲鄰, 五鄰爲里, 四里爲酇, 五酇爲鄙, 五鄙爲縣, 五縣爲遂.'【鄭云, '鄰·里·酇·鄙·縣·遂, 猶比·閭·族·黨·州·鄕.'】 與鄕·黨之制, 確分內外, 而遂外之地, 仍無所論, 則王城六鄕之外, 通稱曰遂, 不旣明乎? 周制, 王城之內謂之邦中, 百里之內謂之郊地, 二百里之內謂之甸地, 三百里之內謂之稍地, 四百里之內謂之縣地, 五百里之內謂之畺地,【天子畿內, 方千里. 四嚮五百里而止】 見於〈載師〉, 而甸·稍·縣·畺, 都無官守, 則酇·鄙·縣·遂之達於四境, 不旣明乎? 遂有大夫,【中大夫一人】 縣有縣正,【下大夫一人】 鄙有鄙師, 酇有酇長, 里有里宰,【上中下三士】 鄰有鄰長,【不言士爲之】 斯則縣地·畺地, 所同有也. 唯〈遂人〉云, '大喪, 帥六遂之役.' 有若遂止有六, 如鄕止有六者然. 故後之論鄕·遂之制者, 遂以六鄕·六遂, 相配爲說, 不知縣·遂之制, 遂達四境也. 但附城六遂之地, 別有遂人,【中大夫二人】 遂師,【下大夫四人】 如六鄕有鄕老.【公三人】 鄕師,【下大夫四人】 是其所異也."

75) 「甲戌 (…) 汝則有大刑.」, 『尙書古訓』 권7 費誓. "天子六鄕在王城之內, 左右各三鄕也. 六遂在王城之外, 左右各三遂也. 自遂以外, 謂之四郊, 而四郊之外, 達於畺畿.【五百里】 皆隸於六遂, 束之以六遂之法, 而屬之於遂師遂大夫, 此周制也."

76) 「大戰于甘, 乃召六卿.」, 『尙書古訓』 권3 甘誓. "鄕外曰遂, 六遂之民, 亦不過七萬五千. 但遂人之職, 四達於郊野. 雖六遂之外, 咸隸遂人. 故〈遂人職〉云'掌邦之野', 謂凡田野之事, 是掌是管, 非謂六遂之地, 遂達畿疆也."

4-1에서 다산은 도성 밖으로부터 기내 전역에 이르는 모든 가호가 遂의 방식에 따라 편제되는데, 이들 중 다만 도성 밖의 75,000가만을 별도로 '6遂'로 묶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6遂 밖의 민인들 역시 모두 6遂에 예속되어, 수사와 수대부의 관할하에 있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4-2에서 다산은 遂人이 기내 전역의 토지제도와 수취제도를 관할한다고도 했다. 결국 다산은 6遂에서의 제반 통치방식을 기내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관의 직접적이고 계서화된 통치가 모든 민인에게 균질적으로 시행되었음을 강하게 표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독법은 『周禮』의 경의를 거스르지 않은 채 기내의 관수를 해명했던 이전에 비해 자의적인 요소를 다수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周禮』에서는 도비에서의 가호와 토지, 수취를 정목법과 긴밀히 결부시키고 있으며, 이를 주관하는 관사로 小司徒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다산은 『周禮』에서 불분명하게 설명한 도비의 관수를 논정하기 위해 6遂의 제반 제도를 도비로 확장했고, 이로써 충돌되는 양 지역에서의 제도적 차이는 이후의 다산 저작에서도 적실히 해명되지 못했다.

3) '營國'의 원리와 '6鄕·6遂'의 보편화

『尙書知遠錄』에서 다산은 '井' 자 구획에 따른 '營國[도성 건설]'의 원리를 제시했다. 다만 그 대상을 천자국에 한정했다. 그런데 〈自撰墓誌銘(集中本)〉에는 營國 원리의 적용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장되고 있다.

> 鏞이 『周禮』에 익숙하여 새로운 뜻을 많이 세웠다. 6鄕의 제도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6鄕은 王城 안에 있다. 匠人이 國城을 조영함에 있어 9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王宮은 중앙에 위치하고 앞에는 조정의 관서가 있고 뒤에는 市廛이 있으며, 좌우에 육향이 셋씩 서로 향하고 있다. 鄕이란 '향한다[嚮]'는 뜻이다. 「夏官」〈量人〉이 무릇 都鄙를 구획함에 있어 모두 九州로 만들었으니, 箕子가 平壤城을 만들 적에 성중에 井形을 그어 만든 것이 모두 이 법이다.77)

77) 「自撰墓誌銘」(集中本), 『與猶堂全書 文集』 16권 墓誌銘. "鏞習於『周禮』, 多建新義. 其論六鄕之制曰, '六鄕, 在王城之內.' 匠人營國, 體爲九區, 王宮居中, 面朝後市, 左右六鄕, 兩兩相嚮. 鄕者, 嚮也. 夏官量人, 凡作都鄙, 皆爲九州, 箕子作平壤城, 城中畫爲井形, 皆此法."

인용문에서 다산은 〈匠人〉에서 도성을 9분한 형태를 '井田'의 모양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도성 가운데에는 左廟右社를 거느린 王宮이, 위와 아래에는 朝廷과 市廛이, 그리고 양쪽 3개씩의 구역에는 6鄕이 마주보며 배치된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尙書知遠錄』에서 표명했던 바의 '營國' 원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주요한 차이점이 확인되는데, 바로 이 같은 원리가 도성의 조영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즉 다산은 「夏官」〈量人〉 조를 근거로 들면서, '都'와 '邑'이라면 모두 營國의 원리를 따랐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근거로서, 기자가 조선에 건설했던 평양성의 구획 모양을 제시했다.

이처럼 營國의 원리를 모든 층위의 도읍에 보편적으로 적용한 독법은 『尙書古訓』에도 동일하게 피력되어 있다.[78] 나아가 다산은 천자국에 특화시켰던 '6鄕·6遂'를 모든 등급의 제후국 도성에서 시행된 보편적 전장으로 재해석했다. 아래를 보자.

> 변론하여 말하기를, (…) 제후는 마땅히 차등이 있는데, 도성을 조영하는 법에 반드시 9개로 나누어 '井'자 형태를 만들고, 공궁은 가운데에 거하고, 앞쪽의 조정과 아래쪽의 시전이 위치해 모두 3개의 구역이 되며, 좌우에 6鄕과 함께 모두 9개의 구역이 된다. 이것은 곧 제후의 도성 역시 그러하다. 그런 까닭에 「夏官」〈量人〉에서 "도성을 나누어 9개의 州를 만들며, 都邑을 만드는 것 역시 이와 같다."라고 했으니,【采邑은 小都이다.】 노나라의 도성 역시 반드시 6鄕과 6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그 품은 것은 반드시 왕성보다는 작았다.[79]

모두에서 다산은 도성을 건설함에 있어 천자국과 제후국에 차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은 유교 경전에 구조화된 천자국과 제후국의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尙書知遠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

78) 「大戰于甘, 乃召六卿.」, 『尙書古訓』 권3 甘誓. "〈考工記〉'匠人營國, 方九里而九分其國', 亦井田形也. '中爲王宮,【左廟右社, 在其內】 面朝後市', 九分除其三矣.【朝者, 百官之署. 如我六朝諸司】 其餘六分, 士民居之, 是謂六鄕. 鄕者, 嚮也. 兩兩相嚮, 以衛王宮也. 故〈考工記〉曰'九分其國, 九卿治之'. (…) 不惟王城之制九分六向, 卽凡造都設邑, 皆用此法. 故夏官量人, 掌建國之法, 分國爲九州.【州, 聚也. 猶言九區】 營國城, 營后宮, 量市朝, 道巷門渠, 造都邑亦如之.【都邑者, 小都·采邑之類】 不唯周公之制九分六向, 殷人亦然. 故箕子東出朝鮮, 造都於平壤, 其國城之內, 割爲九區如井形.【見『南史』】 此本法象於〈洪範〉九疇之形, 則虞·夏以來所不變也."

79) 「甲戌 (…) 汝則有大刑.」, 『尙書古訓』 권7 費誓. "〇辨曰 (…) 諸侯宜有差等, 而營國之法, 必九分爲井形, 公宮居中, 面朝後市爲三區, 左右六鄕, 共爲九區. 斯則諸侯之國亦然. 故〈夏官·量人〉云'分國爲九州', 作都邑, 亦如之.【采邑之小都】 魯之都城, 亦必六鄕·六遂, 可知. 特其所函, 必小於王城矣."

하지만 그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 『尙書古訓』에는 『尙書知遠錄』과 주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도성을 '井' 자로 구획해서 9역으로 나누는 방식이 모든 등급의 도읍에서 동일하게 시행되었다고 했다. 둘째로는 9개 구역의 구성 역시 모든 도읍에서 동일하여, 궁성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조정과 시전, 양옆에 6鄕이 위치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모든 도읍에서는 6鄕에 상응하여 도성 밖에 6遂가 배치되었다고 보았다. 이상이 모든 도성에서의 공통점이라면, 넷째로는 도읍의 위계에 따른 차이점을 설명했다. 도성 내·외부에 들어서는 취락의 크기가 각각 달랐다는 것이다. 이로써 『尙書古訓』은 '6鄕·6遂'를 도읍의 위계와 무관한 향수제의 유일한 형태로 간주했고, 鄕·遂의 단위 규모에 차이가 있음을 통해 도읍의 위계에 따른 차등을 설명했다.

'6鄕·6遂'를 향수제의 보편적 형태로 간주하게 되면서 이와 연동되는 견해도 생겨났는데, 軍長의 관료적 지위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甘誓」의 '乃召六卿'에 대한 『尙書古訓』의 주해를 보자.

> 내가 보기에 6軍이 6鄕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출사할 때 향대부가 반드시 그 장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周禮』에 글이 없다. (…) 공영달과 채침의 말과 같다면, 평시에 6鄕의 경은 덕망이 있으면 모두 삼을 수 있는데, 군려의 일에서는 반드시 무력을 쓰니 어찌 반드시 향대부가 장이 된다고 하겠는가?80)

다산은 6軍의 장을 향대부가 맡았다는 뜻이 『周禮』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尙書知遠錄』에서부터 제기했던 의문이다. 그러나 『尙書知遠錄』에서의 다산은 향대부와 군장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채, 무왕대까지는 6鄕의 향대부가 6軍의 장을 겸임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 같은 해석은 당시의 그가 국의 위계에 따라 鄕·遂·軍의 개수 모두 6개[천자국]-3개[대국]-2개[차국]-1개[소국]로 달랐다고 보았던 것에 연유하는 바가 컸다.

---

80) 「大戰于甘, 乃召六卿.」 『尙書古訓』 권3 甘誓. "○案, 六軍雖出於六鄕, 出師之時, 鄕大夫之必爲其將, 『周禮』無文. 且天子六軍, 未嘗盡出於六鄕. (…) 設如孔·蔡之言, 平時六鄕之卿, 苟有德望, 皆可爲之, 軍旅之事, 必用武力. 奚必鄕大夫爲將?"

하지만 『尙書古訓』에서의 다산은 국의 위계에 따라 군의 개수는 변화했지만, 향의 개수는 모든 국에서 6개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비법과 개수를 근거로 체결되어 있던 향과 군의 관계를 해체한 것이다. 이는 인용문에서 군장이 6鄕에서 나올 수 없다고 단정하게 된 근거이기도 하다. 즉 편제와 규모에 있어 향과 군이 상이한 체계 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봄으로써, 군장 역시 향[향대부]과 무관한 인물로 임명했다고 간주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尙書知遠錄』에서 미처 절연하지 못했던 6鄕制와 군제의 연관성이 『尙書古訓』 단계에서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는 교육과 교화의 공간으로 특화시켰던 6鄕의 성격을 통치체제 하에서 보다 완전하게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다산은 향대부와 무관해진 군장의 관료적 지위를 6관 관제와 결부시켜 해명했다. 「牧誓」의 '司徒・司馬・司空'에 대한 『尙書古訓』의 주해에 따르면, 다산은 국의 위계에 따라 官과 軍의 수가 연동되며, 6관의 관장은 군장을 겸임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산은 제후국이라도 6관을 거느렸으며, 따라서 「牧誓」 당시 제후국의 군주였던 무왕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았다. 다만 친병의 규모는 국의 위계에 따라 엄히 지켜졌던 까닭에 무왕 당시의 친병 수는 대국의 지위에 따라 3軍이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다산은 경문에서 6관의 관장 중에서 '司徒・司馬・司空'만을 부른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즉 군장은 애초부터 관장이 겸임하는 것이지만, 「牧誓」 당시에는 관과 군의 수가 일치하지 않았던 까닭에 다만 6관 중에서 司徒・司馬・司空만이 3군의 군장을 겸임했다는 것이다.[81]

5. 鄕遂論의 변화와 『經世遺表』 저술의 과정

1) 申綽과의 논쟁과 鄕遂論의 변화

지금까지의 논증을 통해 다산의 향수론 변화에 있어 친병 징발범위가 초

81) 「王曰, (…) 濮人.」, 『尙書古訓』 권4 牧誓. "○訂曰 周之三卿, 已自亶父之時有之, 故〈緜〉詩曰, '乃召司空, 乃召同徒.' (…) 文王三分天下有其二, 況於武王之時, 六官未備乎? 意此三卿, 是軍旅所統, 從行在軍, 故召而誓之也. (…) 此經三卿, 卽三軍之長, 玆所謂大國三軍也, 大國三軍則是矣. (…) 若夫三軍之制, 其限本嚴. 故春秋之時, 晉增作三軍,【僖廿八】名之曰三行, 以辟六軍之名, 斯可驗也."

기의 6수에서[『尙書知遠錄』] 만년의 기내 전역에 이르기까지[『尙書古訓』]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고, 『經世遺表』에 친병 징발범위에 대한 초기와 만년의 견해가 모두 표명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상은 『經世遺表』가 『尙書知遠錄』의 고법 이해 하에서 착수되었으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가필]되었음을 의미한다.[82]

특히 『經世遺表』의 〈都統營〉과 〈匠人營國圖〉에서의 향수론은 遂에서의 편제 및 통치방식과 친병의 징발범위를 기내 전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尙書古訓』에서 표명된 다산 최후의 향수론과 동일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신작과의 서신에는 이 같은 만년의 향수론에 근접한 견해가 표명되어 있다는 점이다.

5-1. 先儒들은 大國은 3軍이므로 단지 3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우견으로는 중앙이 公宮이 되고 앞은 朝廷, 뒤는 시전이 되며 좌우는 6鄕이 되어 9개의 구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천자의 도성과 公・侯・伯・子로부터 邦都와 縣鄙에 이르기까지 무릇 都邑이라고 이름 지워진 것은 그 제도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므로 「夏官」 〈量人〉은 "도성을 건설하는 법을 관장하는데, 도성을 나누어 9개의 州로 하고 도성의 城郭과 後宮을 건조하며 市朝・道巷・門渠를 측량하는데, 都邑을 조성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9州는 9區와 같은 말인데 왕성보다 작기 때문에 鄕을 바꾸어 州라고 했다.】[83]

5-2. 家削의 외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육수・방전의 지역을 왜 유독 놓아둔단 말입니까. 반드시 이 육군의 額數는 육수와 방전에 적용되며 육향 안에서도 활 쏘고 말 타는 기예가 있는 사람은 역시 軍籍에 들어가는데 한 집안에서 한 사람씩을 책임 지우는 식은 아닙니다. 徒役을 1가구당 한 사람이 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 집안에 부역할 수 있는 사람이 많더라도 한 사람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홀아비나 과부 또는 廢疾者가 있는 집까지도 그 1인의 몫을 감하

82) 이 같은 정황은 『經世遺表』에서 표명된 삼대 토지제도와 수취체제에 대한 다산의 이해에 있어서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윤석호, 「丁若鏞 經世學의 國家改革論과 農者得田」,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8; 「丁若鏞의 三代 田賦論—三代 '二元的 田賦論'의 논정과정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제132호, 震檀學會, 2019b.

83) 「答申在中」(제5서), 『與猶堂全書 文集』 권12 書. "先儒謂大國三軍, 止有三鄕. 然以愚所見, 中爲公宮, 面朝後市, 而左右六鄕, 以成九區, 則上自天子之國, 公侯伯子, 以至邦都・縣鄙, 凡以都邑爲名者, 其制皆同. 故〈夏官〉: "量人掌建國之灋, 分國爲九州, 營國城郭, 營后宮, 量市朝・道巷・門渠, 造都邑亦如之."【九州猶言九區, 小於王城, 故變鄕言州】"

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84)

인용문은 해배 후 다산이 향수제에 대해 석천 신작에게 보냈던 편지[제5서] 중의 일부이다.85) 왕복된 편지에서의 표면적인 논점은 정현의 견해를 따라 鄕을 도성밖에 위치시켰던 신작에 대해, 鄕이 도성 내에 위치했음을 다산이 주장하는 것이었다. 일면 『尙書知遠錄』에서부터 표명된 견해와 동일해 보일 수 있으나, 위의 두 인용문에는 이로부터의 주요한 변화상이 확인된다.

먼저 5-1에서 다산은 가호당 반드시 병사 1인을 징발하지 않았으며, 친병의 징발범위가 최소 공읍에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징발범위를 기내 전역으로 보았던 『經世遺表』 〈都統營〉이나 『尙書古訓』의 견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遂 혹은 郊까지로 비정했던 견해들보다는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또한 5-2에서 다산은 '榮國'의 원리가 왕성을 비롯한 모든 도읍에서 시행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원리를 천자국의 도성에 국한했던 『尙書知遠錄』보다는 확대된 것이며, '6鄕·6遂'까지를 보편적 전장으로 간주했던 『尙書古訓』의 견해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인용문의 내용은 앞서 살펴봤던 〈자찬묘지명(집중본)〉의 견해와 거의 동일한데, 이는 다산 스스로 밝혔다시피 신작과의 서신 왕복 직후에 〈자찬묘지명〉을 썼기 때문이었다.86)

이상의 정황적 근거들은 해배 후 『經世遺表』의 저술과정에 대한 주요한 2가지의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로 郊까지로 한정했던 친병의 징발범위는 신작과의 서신이 작성된 1822년 6월 23일87) 이전 어느 시점에 최소 공읍까지로 확장되었다. 다만 이 같은 견해변화가 신작과의 논쟁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서신이 교환되던 중에 변화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

84) 「答申在中」(제5서), 『與猶堂全書 文集』 권12 書. "家削以外, 雖不可詳, 六遂·邦甸之地, 胡獨舍矣? 必此六軍之額, 通於遂·甸, 而六鄕之中, 其射御成藝者, 亦入軍籍, 非以一家責一人也. 徒役毋過家一人者, 雖其可任者多, 毋過一人, 非謂鰥寡廢疾之戶, 毋減一人也."

85) 해배 후 다산은 석천과 지속적인 교유를 했다. 특히 신작이 『雅言覺非』의 〈鄕〉 조목에 대해 써준 첨지를 시작으로, 둘은 편지를 통해 三代의 鄕遂制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개진했다.

86) 「自撰墓誌銘」(集中本), 『與猶堂全書 文集』 권16 墓誌銘. "鄭玄以六鄕謂在郊外, 則鄕三物教萬民, 皆無所施矣. 申緯承旨, 猶守鄭義, 鏞往復三四, 以明其不然."

87) 다산은 편지의 말미에 '壬午六月卄三日'이라고 날짜를 부기했는데, 이는 1822년 6월 23일임이 확정적이다.

둘째로 〈都統營〉과 〈匠人營國圖〉에서 피력된 향수론은 신작과의 서신에서 표명된 견해보다 기내의 관료제적 집권성과 균질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尙書古訓』의 향수론과 흡사하다. 이로써 보건대 신작과의 서신 이후에도 다산은 이 같은 방향성 하에서 향수론을 확장시켰고, 이를 토대로 『經世遺表』를 수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빨라도 1822년 6월 23일 이후였다.

덧붙이자면, 향수론의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상의 추이와 『經世遺表』의 집필 과정은 『經世遺表』 필사본의 서지적 분석을 통해서도 추인될 수 있다. 현전하는 『經世遺表』 필사본 중에서 가장 선행한 판본으로 추정되는 것은 김영호 소장본과[이하 김영호본, 37권 13책] 근래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에서 발견된 판본[가와이본]이다.[88]

필자는 양자 중에서 김영호본이 선행하는 판본이라고 보고 있는데,[89] 그 대표적인 증거로 冊題와 卷首題를 들 수 있다. 가와이본 3종의 판독 가능한 모든 책제와 권수제는 '經世遺表'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에 비해 김영호본은 4책・9책・12책・13책・14책・15책을 제외하고는[90] 모두 '邦禮草本'과 '經世遺表'가 병기되어 있다. 또한 권수제의 경우, 모두 '經世遺表 券之'로 쓰여 있으나, 자세히 보면 일부 권의 경우 본문의 바탕종이 위에 '經世遺表'라고 쓴 조각을 덧붙여 놓았다.

이상은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經世遺表'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있지 않은 권의 경우, 책제가 '經世遺表'로 변경된 이후 새롭게 저술되거나 혹은 기왕의 판본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필사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왕의 원고를 활용한 권의 경우, 원래의 책제 위에 변경된 책제인 '經世遺表'를 써서 붙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경되기 전의 책제는 '邦禮草本'이었을

88) 가와이문고에는 『經世遺表』 필사본 3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각각은 1책, 4책, 1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와이본 『經世遺表』 3종의 컬러 촬영본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의 수집과 대외 공개에 대해 지면을 통해 사의를 표한다.

89) 다산 필사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는 이처럼 다산 경세학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해명과 긴밀히 결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차후 엄밀한 논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90) 4책・9책・12책・13책・14책・15책의 경우 책제가 '經世遺表'라고만 쓰였다. 이는 책의 표지가 마모되어 '邦禮草本'이라는 책제가 지워졌거나, 혹은 '經世遺表'라는 책명이 부여된 이후에 표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것이 확실시되는데,[91] 이는 '방례초본'이 병기된 표지가 있다는 점과, 김영호본의 전책을 포개어 쌓아올린 書根에 '邦禮草本'이라는 책제가 쓰여 있다는 점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본다면 김영호본은 '邦禮草本'이라는 책제 하에서 쓰인 원고에다 '經世遺表'로 책제가 변경된 이후에 쓰인 원고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92]

김영호본에 대한 이상의 기본적 서지정보 하에서 살펴볼 것은 〈都統營〉 조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都統營〉에는 신작과의 서신보다 진전된, 그리고 다산 최종의 향수론과 흡사한 견해가 표명되어 있다. 그런데 〈都統營〉이 실린 권2의 권수제에는 '經世遺表'라고 쓰인 띠지가 붙어있다. 이는 애초 권2가 '經世遺表'라는 책제가 부여되기 이전에 쓰였음을 의미하므로, 일면 〈都統營〉의 견해가 만년의 향수론에 근접한다는 추정과 상충되는 듯하다.

그런데 〈都統營〉에서 향수론이 피력된 부분을 자세히 보면, 본래의 원고를 절단한 뒤에 새롭게 쓴 부분을 이어서 붙인 흔적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는 다산이 애초 '邦禮草本'이라는 책제 하에서 권2를 작성했고, 이후 향수론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새롭게 써서 본래의 원고에 이어 붙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都統營〉에서의 향수론이 신작과의 서신에서보다 진전된 것임을 볼 때, 〈都統營〉을 수정한 시점은 신작과의 서신이 오갔던 1822년 6월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鄕遂論의 변화에 따른 『經世遺表』 경세안의 수정

『經世遺表』에는 고법과 경세안이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고법에 대한 주해와 경세안에는 다층의 이질적인 내용이 개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91) 필자는 원본을 컬러로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분석했다. 실물을 정밀하게 감식하거나, 붙어있는 종이를 제거해 본다면 본래 쓰인 책제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92) 다산의 玄孫 丁奎英이 1921년에 편찬한 『俟菴先生年譜』의 1817년 기사에 따르면, 『邦禮草本』의 저술을 시작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책을 『經世遺表』라고도 부른다고 했는데, 이는 '經世遺表'라고 명명한 시기가 1817년이었다고 독해될 여지도 있다. 한편 1822년에 저술된 〈자찬묘지명(집중본)〉에서는 '經世遺表'라는 서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經世遺表'라는 책제는 늦어도 〈자찬묘지명(집중본)〉 집필 이전에 부여된 것이 된다.

그 추이를 가늠하면서 다산의 고법 이해와 경세안의 연관성을 해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향수제에 초점을 두어 다산이 시종 제기했던 향수론을 계기적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그 다층의 향수론이 『經世遺表』 곳곳에 표명되어 있음도 확인했다. 이에 아래에서는 『經世遺表』에 개진된 이질적인 도성개혁안이 이 같은 향수론의 변화과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시론적으로 논증해보고자 한다.

다산은 『經世遺表』에서 상이한 2개의 도성개혁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典堵司〉이고 다른 하나는 〈匠人營國圖〉이다. 양자에는 鄕과 遂를 각각 비농업지대로서의 國[도성]과 농업지대로서의 野에 비정했던 다산 향수론의 정수가 잘 구현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典堵司〉에서는[93] 6鄕의 범위를 도성 내의 6구역에 한정했고, 甲第에서 壬第에 이르는 9개 등급의 가옥을 배치했다. 한편 6遂의 범위는 도성 밖의 공간으로 한정했고, 가호는 서민이 거주하는 庚第・申第・壬第 3개 등급만을 배치했다. 鄕과 遂의 위치를 도성의 안과 밖으로 엄밀히 제한한 바탕 하에서, 양자의 차별적인 성격이 체현되는 공간구조를 기획한 것이다. 다만 다산은 〈전도사〉에서 삼대의 향수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도성개혁안에서 사족의 거주 여부로 향과 수를 엄밀히 구분한 것이나, 이로써 6遂를 도성 밖의 서민 전용 거주공간으로 특화한 것 등에서는, 사족의 거주지를 6향에 한정하고 6遂를 전농업지대로 간주했던 『尙書知遠錄』의 향수론이 묻어난다.

이에 비하면 〈匠人營國圖〉의 도성개혁안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확인된다.[94] 무엇보다 다산은 6遂를 구성하는 가호의 직역을 사족에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농민을 제외한 직역자의 거주공간을 도성 밖에 별도로 만들어 '6遂'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이를 다시 6鄕에 행정적으로 부속시켰다. 이로 인해 6鄕이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는 도성 밖으로 확장되었고, 6향에 거주하는 사족의 가호수도 〈典堵司〉에서보다 많아졌다. 또한 '6遂'로 편성된 민호를 제외하고 남는 농민들은 농업지대이자 지방 행정구역인 '郡縣'으로 편성했다.

93) 이하는 다음을 참조하여 서술했다. 「典堵司」, 『經世遺表』 권2 冬官工曹 第六.
94) 이하는 다음을 참조하여 서술했다. 「三班官制」, 『經世遺表』 권3 天官修制.

이 같은 방안은 '城底十里'에까지 팽창되어 있던 당시 한양의 외연을 다분히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현실을 참작해 경세안을 개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6수의 직역구성에 대한 변화된 고법이해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도성개혁안에서 도성 밖에서의 士의 거주지를 허용한 것이나, 이를 '6遂'라고 명명한 것에는, 고법에서의 6遂를 士와 9職의 혼재지로 간주했던 인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이로써 본다면 〈典堵司〉의 도성개혁안이 초기의 향수론에 기초한, 그리고 〈匠人營國圖〉의 도성개혁안이 최후의 향수론에 근접한 고법 이해를 바탕으로 개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추론을 확정할 수 있는 2가지의 근거가 더 있다.

첫째는 과거제 개혁안에서의 급제자 정원의 변화이다. 〈邦禮草本引〉에서 다산은 '不可易'의 조목을 나열했는데, 그중에는 급제자의 정원을 문·무 각각 36명으로 정한 조목이 있다. 그런데 교민 및 과거제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教民之法〉·〈科擧之規〉·〈選科擧之規〉·〈武科〉 등에서는 급제자 정원이 40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비록 다산은 해명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그가 제시한 '不可易'의 내용을 본문에서 바꾼 이유는 〈典堵司〉에서부터 〈匠人營國圖〉로의 변화 하에서 해명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典堵司〉의 도성개혁안에서는 士의 거주지를 도성 내부로 제한했고, 도성 내의 총 가구수를 35,272호로 산정했다. 하지만 〈匠人營國圖〉에서는 '城底十里'의 거주자 중에서 士와 비농 직역자를 별도로 묶어 6遂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6鄕에 부속시켰다. 이로써 6鄕의 관할 공간의 확대되었고, 6수를 포함한 향내의 가호수 역시 64,336호[혹은 62,288호]에 이르게 되었다.[95]

주목되는 것은 〈教民之法〉·〈科擧之規〉·〈選科擧之規〉·〈武科〉에서는 취락을 기준으로 교민·과거제를 체계화했는데, 이때 전국의 가호를 편제한 방식이 〈匠人營國圖〉에서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현전하는 〈教民之法〉·〈科擧之規〉·〈選科擧之規〉·〈武科〉에서의 교민·과거제 개혁안이 〈匠人營國

95) 〈匠人營國圖〉와 〈一遂九坊圖〉에는 6부의 가호수를 각각 28,738호와 26,690호로 상이하게 기록하고 있다. 6수의 총 가호수는 35,598이므로, 이를 포함한 6향의 총 가호수는 64,336호 혹은 62,288호가 된다.

圖〉의 도성개혁안을 토대로 하여 집필된 것임을 알려준다. 또한 기왕의 정원인 36명을 40명으로 수정된 이유도 〈典堵司〉에서 〈匠人營國圖〉로의 도성개혁안 변화를 통해 확대된 6鄕의 가호수가 반영되었기 때문임을 짐작케 한다.

둘째는 〈匠人營國圖〉에 피력된 기내 통치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匠人營國圖〉에서 다산은 수에서의 가호 편제방식과 관수가 기내 전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만년의 『상서고훈』에서 피력된 다산 최후의 향수론과 동일하다. 이로써 보자면 〈匠人營國圖〉는 〈典堵司〉보다 이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며, 또한 그 시기는 늦게는 신작과의 서신 이후로 비정할 수 있다.

6. 결론

본 글에서는 유교 경전에서 전하는 향수제와 이에 대한 선유의 일반적 독법, 이를 비판하며 제기된 다산의 향수론, 그리고 그 만년에까지의 계기적 변화과정 등을 논증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로써 얻어진 내용을 결론으로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周禮』에는 향수제의 고법적 실상이 가장 상세히 전한다. 鄕을 비농업지대로, 遂를 농업지대로 추측케 하는 경의를 담고 있지만, 불분명한 위치와 성격, 기내 구조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이를 확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정현은 정사농의 견해를 받아들여 6鄕을 농업지대로 간주한 선구적인 학자였다. 특히 그는 6鄕 전체의 가호에게서 6軍이 나온다고 보았다. 또한 토지제도를 기준으로 野를 횡적으로 양분한 뒤, 그중 한 권역을 이루는 도비를 기내봉건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 같은 견해는 공영달의 향수론에도 동일하게 확인되는바, 이후 선유가 향수제를 이해하는 주요한 독법이 되었다.

다산의 향수론은 『尙書知遠錄』에서 최초로 표명되었는데, '井' 자 구획을 도성 건설에 적용하고 좌우의 6개 구역에 6鄕을 배치했다. 6鄕을 도성 내에 위치한 비농업지대로, 6遂를 포함한 그 밖의 전역을 농업지대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周禮』에서 표명된 '國'과 '野'의 구조에 부합하도록 鄕과 遂를 배치한 것이며, 만년에까지 변하지 않는 다산 향수론의 골격이 되었다. 다만 이

시기의 다산은 친병의 징발 범위를 6遂로 한정하고 있었고, 채읍이 왕인의 수조지라는 것을 지적했을 뿐 기내의 통치방식은 해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다산의 향수론은 만년의 『尙書古訓』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점 하에서 변화해갔다. 주요한 추이는 3가지로, 첫째는 친병 징발지역의 기내 전역으로의 확대, 둘째는 기내봉건의 부정에 기초한 관수 방식의 일원화, 셋째는 모든 도읍에서 '영국'의 원리와 '6鄕·6遂'의 보편화 등이다.

특히 『經世遺表』에는 『尙書知遠錄』에서 『尙書古訓』에 이르기까지의 향수론 변화상이 다층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신작과의 서신에서 표명된 향수론은 다산 최종의 향수론으로 이행하기 직전의 견해로 보인다. 이로써 볼 때, 『經世遺表』는 『尙書知遠錄』 시기의 고법 이해 하에서 착수되어, 신작과의 서신 이후에까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산은 초기의 향수론에 근거하여 〈典堵司〉의 도성개혁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향수론의 변화에 따라 〈匠人營國圖〉에서 수정된 도성개혁안을 개진했다. 그리고 〈匠人營國圖〉에서의 가호편제는 〈敎民之法〉·〈科擧之規〉·〈選科擧之規〉·〈武科〉 등에 서술된 교민 및 과거제 개혁안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아울러 향수론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상의 추이는 『經世遺表』(김영호 소장본)의 서지적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히 논증될 수 있다.

▮ 참고문헌

『尙書』, 『尙書正義』, 『周禮』, 『周禮注疏』.

『국역 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編, 솔, 1996.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정약용,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공역, 『經世遺表』 1-4, 1989.
_____, 이지형 역, 『역주 다산맹자요의』, 현대실학사, 1994.
_____,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 1-5, 사암, 2010.
_____, 이광호 외 공역, 『대학강의·대학공의·소학지언·심경밀험』, 사암, 2016.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사상과 경세론」 『한국학보』 제78호, 일지사, 1995a, 177-228면.
_____, 「정약용의 경학사상과 경세론 (하)」 『한국학보』 제79호, 일지사, 1995b, 197-228면.
_____, 「다산 정약용의 太學之道」, 『다산학』 제8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6, 129-160면.
_____, 「다산 정약용의 제도개혁안」, 『한국학논집』 제56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4, 7-43면
_____, 「茶山 丁若鏞의 鄕禮 이해」, 『한국실학연구』 제31호, 한국실학학회, 2016, 281-316면.
김태영, 「『經世遺表』에 드러난 茶山 經世論의 역사적 성격」, 『퇴계학보』 제129집, 퇴계학연구원, 2011, 61-136면.
문철영, 「다산 정약용의 『周禮』 수용과 그 성격」, 『사학지』 제19집, 단국대 사학회, 1986, 65-88면.
박종천, 「다산 예학의 경세론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제24호, 한국실학학회, 2012, 195-224면.
백민정, 「정약용 經世書의 鄕禮 규정과 공동체 운영의 특징」, 『동양철학』 제41집, 한국동양철학회, 2014, 197-232면.
_____, 「『周禮』 '6鄕制' 해석을 통해 본 다산의 경세 구상—'향삼물'과 '향팔형' 논의를 중심으로」 『다산학』 제29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91-140면.
_____,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지방운용의 정치적 논리와 특징」, 『동방학지』 제176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6, 185-223면.
孫曉 저, 김경호 역, 『한대 경학의 발전과 사회 변화』, 성균관대 출판부, 2015.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수령 인식과 지방행정의 방향」, 『다산학』 제28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65-106면.
안병직, 「다산과 體國經野」, 『다산학』 제4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3, 54-95면.
_____, 「다산의 田賦改革論」, 『다산 정약용 연구』, 사람의 무늬, 2012.
윤석호, 「丁若鏞 經世學의 國家改革論과 農者得田」,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三代 畿內의 토지제도에 대한 『周禮注疏』의 해석」, 『大同文化硏究』 제106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a, 157-195면.
_____, 「丁若鏞의 三代 田賦論—三代 '二元的 田賦論'의 논정과정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震檀學會, 2019b, 167-204면.
전성건, 『정약용의 철학사상과 체제개혁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趙誠乙, 「丁若鏞의 地方制度 改革論」, 『東方學志』 제77·78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 567-585면.
조성을, 「정약용의 『周禮』 연구와 개혁사상」, 『한국 중세의 정치사상과 주례』, 혜안, 2005.

_____, 「유배 이후 다산의 利用厚生學」, 『다산 정약용 연구』, 사람의 무늬, 2012.
彭 林, 「丁茶山과 『周禮』」, 『대동문화연구』 제28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179-217면.

董巧霞, 「『周禮』所見地方行政組織考察」, 東北師範大 博士學位論文, 2009.
呂文郁, 『周代的采邑制度』, 社會科學文献出版社, 2006.
朱維錚 編, 『周予同 經學史論著選集』, 上海人民出版社, 1996.
彭 林, 「『周禮』畿腹所見中央與地方的關係」, 『史學月刊』 第五期, 河南省歷史學會, 1990, 3-8面.
_____, 『周禮主體思想與成書年代研究』, 中國社會科學院 出版社, 1991.

【Abstract】

The Trend and Implications of Jeong Yak-yong's Theory on Hyangsu-System

Yoon, Suk-Ho*

This paper aims to substantiate Jeong Yak-yong's view of Hyangsu-System under comparison with senior Confucian scholars. The characteristics can be arranged into six categories.

First, Hyangsu-System was most detailed in *Zhou-li*, with no stipulation about the character and the location of Hyang and Su.

Second, Jung Hyun regarded the character of Hyang as agricultural zone, and its location as 100 Li (里) from the palace. He thought that Six-Army (六軍) would be taken out of the Six-Hyang (鄕)'s people. Such interpretation is closely linked to the regional division of the governing method in Kinae (畿內) into Feudalism and Bureaucracy.

Third, Jeong Yak-yong systematically presented the theory on Hyangsu-System in *Sangseo jiwonrog*, and regarded the character of Hyang as non-agricultural zone, and its location as the inside of the Capital, which was a key point that has not changed since then.

Fourth, from *Gyeong'se yupyo* to *Sangseo gohun* (1834), Jeong Yak-yong's theory on Hyangsu-System has changed consistently with three trends. That is, the expansion of areas where Six-Army (六軍) were conscripted, bureaucratic domination everywhere in Kinae,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uilding the Capital into all kinds of Eup (邑).

Fifth, Dasan's theory on Hyangsu-System very similar whith his final theory was founded in *Gyeong'se yupyo* and the letters to Sin Jak (申綽)

Sixth, Jeong Yak-yong's multi-kinds of theories on Hyangsu-System all appeared in *Gyeong'se yupyo*. It means that he began to write *Gyeong'se yupyo* under the opinion about Old-Law (古法) detailed in *Sangseo gohun*, and revised it several times to reflect the changing views.

---

* Lecturer, Cultured Undergraduate, Gye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Jeong Yak-yong, Hyangsu-System, Old Law, Kinae, *Sangseo jiwonrog*, *Gyeong'se yupyo*, *Sangseo gohun*, Jung Hyun (鄭玄), *Zhou-li*, Feudalism, Bureaucracy.

접수일: 2019.06.29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09